

발 간 등 록 번 호

11-1383000-000133-10

www.mogef.go.kr

2020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여성가족부

제1편

2020년도 여성·아동권익증진지침 현황 및 방향 — 1

I. 전략목표 3

II. 여성·아동권익증진 추진연혁 4

III. 시설 및 상담소 현황 23

IV. 2020년 주요사업 변경 및 신설 내용 24

 IV-1. 2019년·2020년 주요사항 비교표 27

V. 2020년 여성·아동권익증진 예산 51

제2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 운영지침 — 55

I. 성폭력피해상담소 57

II.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82

 II-1.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82

 II-2.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사업 115

III. 성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132

IV. 성폭력 피해자 지원서비스 142

 IV-1. 성폭력 피해자 의료 지원 143

 IV-2. 돌봄 비용 지원 161

 IV-3.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167

 IV-4.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177

제3편

아동·청소년성보호사업 운영지침	183
I.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185
I-1.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현황	185
I-2. 취업(예정)자 성범죄 경력 조회	195
I-3. 취업중인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	198
I-4. 점검·확인 결과 인터넷 공개	200
I-5. 종전 형 확정자에 대한 제도 적용 및 불복	201
II.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218
III.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224

제4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지침	243
I. 성매매피해자 지원·상담·자활시설 공통지침	245
II.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입소 및 이용	264
III. 성매매피해자 지원·상담·자활시설 개별지침	267
III-1. 일반 및 청소년 지원시설 운영	267
III-2. 외국인 지원시설 운영	272
III-3.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운영	274
III-4. 자활지원센터 운영	276
III-5. 청소년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부설 대안교육 위탁기관 운영	281
III-6. 성매매피해상담소 운영	284
III-7.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운영	287
IV.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	294
V. 성매매피해자 지원·상담·자활시설 기능보강	302
VI.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사업	311
VI-1. 추진체계 및 기준	311
VI-2. 『열린터』 운영	324
VII.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기타 지원	326
VII-1. 성매매피해자 신용회복 지원	326
VII-2. 성매매피해자 취업성공패키지 지원(고용노동부)	327
VII-3. 성매매피해자등 및 가족의 취학지원 절차	328

제5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지침 — 329

- I. 가정폭력 상담소(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포함) 331
- II.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비공개시설) 349
- III. 가정폭력 피해자 퇴소 시 자립지원금 379
- IV.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384
- V. 여성긴급전화 「1366」 395
- VI. 『긴급피난처』 지정·운영 406
- VII.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408
- VIII.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420
- IX.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426
 - IX-1. 사업수행 체계 426
 - IX-2. 세부운영 지침 431
- X.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438
 - X-1. 사업수행 체계 438
 - X-2. 세부운영 지침 444

제6편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사업 운영지침 — 453

- I.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운영 455
- II. 폭력피해 이주여성 자활지원센터 운영 471
- III. 폭력피해 이주여성 그룹홈 운영 483
- IV.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 490

제7편

북한이탈여성 지원사업 운영지침 — 513

- I. 북한이탈여성 상담 및 심리치유프로그램 운영 515

제8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지침 _____ 523

I.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525

 I-1. 사업 개요 525

 I-2. 생활안정지원대상자 결정 및 등록 절차 529

 I-3.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내용 532

 I-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537

 I-5.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 조사 및 보고 545

 I-6.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법률상담등 지원 546

제9편

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 운영지침 _____ 547

I. 학교 및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 운영 549

제10편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지침 _____ 565

I.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사업개요 567

II.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운영 572

III. 세부 사업 운영 576

IV. 예산의 지원 및 관리 583

V. 지도·점검 및 평가 588

※ 각 지침별 ‘서식 및 참고자료’는 동 지침에 인쇄하지 않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주요정책 → 정책자료실 → 인권보호)에 업로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여성·아동권익증진지침 현황 및 방향

- I. 전략목표
- II. 여성·아동권익증진 추진연혁
- III. 시설 및 상담소 현황
- IV. 2020년 주요사업 변경 및 신설 내용
- V. 2020년 여성·아동권익증진 예산

I. 전략 목표

전략 목표

여성·아동폭력에 적극 대처 및 여성·아동인권
보호지원체계 구축

성과 목표

1.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중심의 지원서비스 확충
2.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중심의 지원서비스 확충
3. 아동청소년 성보호 강화
4. 성매매 방지 및 피해여성의 자활기반 조성
5. 취약계층 여성에 대한 보호와 지원 강화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아동에 대한 폭력 및 인권침해

II. 여성·아동권익증진 추진연혁

구 분	주 요 추 진 내 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19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문제에 대한 종합대책 결의(3.2) * 여성정책심의위원회 - 성폭력근절 실무추진회의(4.28) * 국무총리실 - 시·도에 보호업무지침 시달(5.18) - 시·도에 보호시설 시범운영지침 시달(8.31) •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운영(서울 자매복지회관 지정)
	19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 - 성폭력상담소 설치(11월)
	19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1월) -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지원(1월)
	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성폭력전문상담소 신설(9월)
	2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부 신설로 보건복지부에서 업무 이관(1월) - 「여성폭력긴급의료지원센터」 위촉(10월) • 경찰병원 등 7개소
	2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체크리스트(진료기록) 및 성폭력응급 키트 개발(2월) - 시·도별 종합병원급 전담의료기관 확대 지정(11월) • 부산의료원 등 12개소 지정
	2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성폭력전담기구 설립 추진기획단 구성·운영
	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4월, 5월) -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 개소(6.18), 연세의료원 위탁·운영 - 성폭력피해자 치료보호제도 개선 • 가정·성폭력 치료비 통합운영 • 시·군·구 치료비 집행 및 치료비집행절차 간소화 • 성폭력응급키트 처치비 75,000원 신규 인정
	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남해바라기아동센터 개소(6. 9), 경북대병원 위탁·운영 - 호남해바라기아동센터 개소(6.29), 전남대병원 위탁·운영 - 여성·학교폭력피해자 One-Stop지원센터 설치추진(8개소)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학교폭력피해자 One-Stop지원센터 설치(6개소) 및 운영(14개소) -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학교폭력피해자 One-Stop지원센터의 사업수행방식 전환(지자체보조)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에서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사업 실시 - 아동·여성보호 종합대책 수립·추진('08.4~) ※ 총리실을 중심으로 9개 부처 합동 아동·여성보호대책 추진점검단 구성·운영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성폭력 재발방지대책 수립·추진('09.10~)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구 분	주 요 추 진 내 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시범 운영지역 선정(10.7월) - 지역연대 표준모델 개발 연구(10.10월~) -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지원사업 실시 - 보완된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 「성폭력피해 아동·청소년 전용쉼터」 설치·운영(2개소) ※ 경남(창원)전용쉼터(8.24개소), 경북(김천)전용쉼터(9.1개소) -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4개소 신설(부산, 강원영동, 전남, 서울)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10.4.15)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2개소 신설(경북, 울산) -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표준운영모델 개발·보급 - 아동안전지도 제작 매뉴얼 개발·보급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11.1.1)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위탁형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3개소 전환(부산, 광주, 충북) - 강원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개소(12월, 원스톱 및 아동센터 통합) -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 전문인력 교육(205명) - 성폭력 피해자 치유회복프로그램 운영 전문인력 교육(150명) - 「성폭력·가정폭력 실태조사 방법 등 개선에 관한 연구」 완료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13.6월 시행 예정) • 보호시설 종류 세분화 및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지정신고제 등 -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로 명칭 변경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스톱지원센터 3개소 신규 개소(부산, 인천 북부, 경기 서부) - 경기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개소(12.23, 기존 경기 원스톱 기능 확대) - 장애인 성폭력상담소 5개소 신규 지원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신축 및 개소 추진 • 장애인 보호시설 2개소 신규 개소(전남, 충남) 및 특별지원시설 신축 추진 •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1개소 신규 개소(경남) - 2013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실시 - 2013년 전국 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평가 실시(여성폭력평가)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6.19)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북서부해바라기센터 신규 개소(고양시) 및 거점센터(아주대학교병원) 개소 - 성폭력상담소 4개소 신규 지원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5개소 신규 개소 • 장애인 보호시설 2(대전, 제주), 일반(전남), 특별지원 2(경기, 대전) - 피해자 간병비 및 돌봄비용 지원, 치료동행서비스 신규 실시 - 보호시설 입소자에 대한 사업비(생활지원비 등) 및 직업훈련비 신규지원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1.21, 5.28)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북부해바라기센터(서울) 및 경북서부해바라기센터(경북 김천) 신규 개소 - 성폭력상담소 4개소 신규 지원 - 성폭력 피해자 자립공동생활시설 2개소 신규 지원(경북, 경남) - 피해자 돌봄비 지원 대상 13세 이상 1~3급 장애인까지 확대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2.3) - 지역안전프로그램 사업 17개 시·도 실시

구 분	주 요 추 진 내 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중부해바라기센터(서울) 신규 개소 -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1개소 신규 지원(제주)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 시행('16.6.2)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 시행('16.9.3)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서부해바라기센터(전북) 신규 개소 -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충북) 신축 추진 - 피해자 돌봄비 지원 대상 피해아동의 13세 미만의 형제·자매까지 확대 -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수립·추진('17.9.26.~)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 시행('17.6.22)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 시행('17.10.30)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남부해바라기센터(강원) 신규 개소 -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충북) 개소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개소('18.4.30.)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소 등의 장, 상담원뿐만 아니라 그 밖의 종사자도 범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등은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18.3.13. 시행)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삭제 지원 및 구상권 행사 근거 신설('18.9.14.시행) - 성폭력 피해자 비급여 심리치료 지원 단가 상향(1회당 15만원 → 1회당 20만원) - 외국인 등록과 상관없이 성폭력피해자라면 의료·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 -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사업 종료('19년 법무부로 이관)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부산) 신축 추진 - 전국 성폭력 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에 인력(1인) 추가배치 등 지원 강화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시행('19.9.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에 대해서만 전임 의무를 부과하고, 다른 종사자에 대해서는 다른 업무의 겸임을 허용하도록 개선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신고의무제도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범죄자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취업제한 제도 도입·시행('06.6.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제한기간 : 5년(형이 확정된 날부터 적용) • 적용시점 : 2006.6.30~2008.2.3 기간 중의 성범죄자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신설('06.6.30)

구 분	주 요 추 진 내 용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신고의무제도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간 및 대상기관 등 확대 시행('08.2.4) • 취업제한기간 : 10년(형이 확정된 날부터 적용) • 적용시점 : 2008.2.4 이후 성범죄자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사업 실시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제한대상기관장에 대하여 성범죄경력 조회 미이행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10.1.1) - 취업제한 대상 기관 및 성인대상 범죄까지 대상자 확대 등('10.4.15) • (추가)대상기관 : 개인과외 교습자 • 대상자 확대 : 아동청소년대상은 물론 성인대상 성범죄까지 • 경력조회 대상자 확대 :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 - 성범죄 경력조회 및 성범죄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10.1.1)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관서 확대('12.3.16) -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 시행('12.8.2) • (추가)대상기관 : 의료기관(의료인), 가정방문 학습지 교사 -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12.8.2)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 시행('13.6.19) • (추가)대상기관 : 경비업법인(경비업무 종사자만 해당),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청소년게임제공업·청소년실을 갖춘 연습장업의 시설, 청소년활동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제도 안내책자 제작·배포('14.4)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http://crims.police.go.kr)에서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및 회신서 출력 가능('15.1.2) -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의 장도 민감정보처리 및 고유식별정보처리 가능('15.4.20)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 시행('16.11.30) • (추가)대상기관 : 위탁교육기관,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 - 연1회 점검·확인 의무 법제화 및 본인 성범죄 경력조회 절차 추가('16.11.30)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제한 선고 방식 변경 • 법원에서 성범죄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 선고(최대 10년) * 종전 성범죄로 인한 형 확정자의 경우 형량에 따라 5년, 3년, 1년 차등적용 -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 시행('18.7.17) • (추가)대상기관 : 대학, 위스쿨, 위센터, 드림스타트, 장애인 특수 교육 지원센터, 어린이회관 등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 시행('20.5.27) • (추가)대상기관 : 국제학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등

구 분	주 요 추 진 내 용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2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부처 합동 성매매방지종합대책 수립·추진 - 현장상담센터 등 여성복지상담소 운영지침마련
	2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무총리 산하 민·관합동 「성매매방지기획단」 설치(6월) - 탈성매매자활지원사업 및 외국인여성쉼터 시범사업 실시 - 무료법률구조사업 실시
	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3.22), 시행령(9.23), 규칙(11.5) 제정 - 성매매방지종합대책확정(3월) -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구성(11월) - 성매매 집결지 시범사업 추진(11월) - 성매매방지 상담원 양성교육 실시(11~12월) - 성매매피해자 창업자금 지원사업 추진(11월)
	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매매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지원(1월) - 성매매피해자 신용회복 지원사업 개시(3월) - 성매매집결지 시범사업 중간평가(5월) ※ 2005. 미국무부 국제인신매매보고서의 1등급 분류, 국제모범사례 선정(6월) - 그룹홈 제도 시범도입(6월) -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사업 1차 확대(9월) -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사업 운영지침 수립(9월) -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사업 2차 확대(10월) -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개소(11.23)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12.29) • 시설 입소기간 연장(1년), 피해자치료 전담병원 지정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사업 3차 확대(3월)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5.2) • 그룹홈 설치 규정 마련 등 - 의료·법률·직업훈련 통합지원 가능, 간병인 지원 가능토록 지침 개정(8.14) - 자활지원센터 정식 사업운영(3개소) 및 운영지침 수립·시행 - 성매매방지법 시행 2년 국제회의 개최(9.6) - 「자활지원가이드」 발간(9월) - 전국 집결지현황 실태 기초조사 실시(2~11월) - 「상담, 의료, 법률지원 매뉴얼(3종)」 발간(12월) - 성매매방지 상담원 양성교육 교과과정 가이드북 발간(12월)

구 분	주 요 추 진 내 용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 성매매방지정책 이행평가 실시(1월) - 자활지원센터 일자리 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최장 3년까지, 1월)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의 서비스대상을 입소자 이외에 “이용자”로 확대(1월) - 성매매예방교육 전문강사 위촉(2월, 12월)·운영(120명) - 2007 전국 성매매실태조사(3~11월) - 동료상담원 일자리 사업(부처공모형) 시행(8월) - 성매매방지법 시행3년 소책자 발간(9월) - 성매매피해자 자활정책 심포지엄 개최(9.17) - 성매매방지종합대책 강화책 마련(12월) - 청소년 성매매 예방교육 영상물 제작(12월) - 대학생 성매매 예방교육 자료집 발간(12월) - 성인 성매매 예방교육 가이드북 발간(부록 CD포함~12월) - 성인 성매매 예방교육 영상물 제작(12월)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대상 지원시설에 대한 운영비 추가 지원(1월) -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사업 재원 일반회계로 변경(1월)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3.21, 6.13),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시행(9.10, 9.14, 9.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 설치 법적근거 마련(6월)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설치기준 완화(9월) • 성매매 예방교육 의무기관 확대(초·중·고 → 국가기관·지자체·공공단체까지) • 국내외 성매매 실태조사 실시(3년 주기) - 성매매피해자 지원안내 홍보 리플렛 제작·배포(12월) - 성매매 피해여성 자활성과 진단척도 및 종합지원시스템 개발(3~11월) - 집결지 성매매여성 자활지원사업 확대방안 마련(12월) - 성매매방지 종사자 양성교육을 통한 역량강화(연중) - 해외 성매매방지를 위한 UCC 공모(8월) - 성인 성매매 예방교육 가이드북 발간(12월) - 성인 성매매 예방교육 영상물 제작(12월)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매매 집결지 현장기능강화사업 도입(1월,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개 지역에 대한 시범사업 운영(1월~) 후 10개 지역으로 사업확대(7월~) - 성매매집결지 열린터 8개소 설치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2.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습종사자 자격제도 법적근거 마련 • 성매매피해자 의료지원범위에 치아손상 치료비용 포함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성매매 예방교육 지침수립 및 기관통보(3월) - 청소년 성매매피해자 진학지원 개선방안 마련(4월)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설립·운영(5월) - 여성폭력방지 중앙점검단 설치(6월) - 공공기관 성매매예방교육 전문강사 워크숍 개최(7월) - 외국인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1개소 신규설치(경기 / 6월) - 자활지원센터 2개소 신규설치(대구, 전남 / 10~12월) - 성매매예방 종합관리시스템 운영(10월~12월)

구 분	주 요 추 진 내 용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7.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수교육업무의 위탁기관 규정 신설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수교육의 교육내용, 지원시설과 상담소의 평가 규정 신설 - 청소년 성매매피해자의 학습 결손 보완을 위한 대안교육 위탁(1개소) - 성매매 집결지 현장기능강화사업 확대(10 → 15개소) - 자활지원센터 일자리 제공사업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별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 제공사업 참여자수 탄력적 배정 (센터별 동일 → 센터별 10~30명) • 일자리 제공사업 참여자 지원금 인상(월 485천원 → 월 504천원) - 의료·법률·직업훈련 지원기간의 현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장 3년의 지원기간 산정 시 공백기간 제외 - 성매매피해자 관련 지원시설 시설평가 실시(82개소)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3.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접대 정의 및 성접대 실태조사 규정 신설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접대 실태조사 내용 규정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확대(청소년, 자활, 그룹홈, 대안교육위탁교육 각 1개소) - 청소년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심리프로그램 시범 운영 - 일자리 제공사업 참여자 지원금 및 근무시간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504천원, 월 130시간('10년) → 월 529천원, 월 140시간('11년) - 성매매피해자 종사자 상해보험 필수가입(상담소) - '열린터' 프로그램 운영비 신규 지원(개소당 월 50여만 원) - 성매매 방지정책 홍보 캠페인 전개(9.24) 및 국·영문리플릿 제작·배포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1) 및 동법 시행령(8.2)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흥주점 내,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은 무효라는 사실과 성매매피해 상담소의 업무·연락처 등의 정보를 게시하도록 의무화 • 미 게시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청소년 지원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 채용 전 성범죄 경력조회 실시 - 일자리 제공사업 참여자 지원금 및 근무시간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529천원, 월 140시간('11년) → 월 545천원, 월 150시간('12년) - 성매매피해 상담소 성매매예방 업무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매매피해 청소년의 사이버포래상담, 청소년 밀집지역 아웃리치 등 - 시도별 구조지원사업비 중 35% 이내에서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비 집행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시설 종사자에 대한 상해보험료 지원 확대 - 종사자 양성교육 실습을 소속기관에서 가능한 교육대상자에 '수습 종사자' 포함 - 법률소송 중인 외국인 지원시설 입소자의 자활지원센터 공동작업장 지원 - 자활지원센터 인턴십 지원기간 연장 가능 - 시도별 구조지원사업비 중 40% 이내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비 집행 - 지원시설 입소자 '진정함' 설치·운용 의무화(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제2조) -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지원대상에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입소자 포함

구 분	주 요 추 진 내 용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3.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매매 예방교육 점검 강화, 지원시설 입소기간 연장, 성매매추방주간 신설 등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전면개정(9.28) -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대상 청소년유해매체물에 관한 고시 제정(12.29) - 피해자 지원시설 확대(청소년,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상담소 각 1개소) - 성매매피해자 사례관리 매뉴얼 개발(12월) - 외부자원을 활용한 자활매장 활성화 지원(미용실, 카페 등)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제공사업 참여자 지원금 증액(※ 시간당 6,030원 → 6,170원) - 일반·청소년 지원시설 간병비 지원 근거 마련 - 평택자활지원센터 1개소 설치·운영(고령 성매매피해자 중점 지원) - 자활사례집 ‘내가 제일 잘한 일’ 발간 - 자활지원 가이드북 제작 - 청소년지원시설 1개소 폐지(‘15.6월)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12.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 내용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신고 포상금 안내문 추가 규정 • 여성가족부 또는 지자체 공무원의 숙박업 등 업소 출입 지도 근거 마련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8.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소등 휴·폐지시 보조금·후원금 사용결과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제출 의무 규정 • 상담소등 폐지시 시·군·구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 폐지신고서와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 신고관청과 세무서에 모두 제출한 것으로 처리 • 성매매방지 상담원 양성과정 교육시간을 150시간에서 120시간으로 단축 • 별지서식 중 ‘상담기록카드’ 및 ‘입소·이용자 카드’를 삭제하고 지침으로 이관 - 고령 성매매피해자 중점 지원을 위해 등두천자활지원센터 지정·운영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확대(상담소 1, 자활지원센터 1) - 각 상담소는 보수교육 과정에 매년 최소 1명의 상담원이 ‘청소년지원 전문과정’에 연 1회 이상 참석 의무화 - 자활지원센터, 상담소의 월 임차료(월 25만원 한도) 집행 가능 - 의료급여·건강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의료항목에 대한 의료비 및 의료지원에 수반되는 간접비용 지원 - 자활지원사례집 ‘언니, 같이 가자!’ 발간

구 분	주 요 추 진 내 용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 지원시설 입소기간 연장요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성매매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시설 입소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지원시설장이 입소자의 피해회복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보고하면 지자체장의 승인 없이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상담소의 폐지·휴지 신고 처리기한 변경(즉시 → 10일) • 신고 수리 간주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해당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의 월 임차료(월25만원 한도) 집행 가능 - 자활지원센터 1개소 확충(93개소 운영 지원) - 일자리 제공사업 참여자 지원금 인상(시간당 6,170원 → 6,470원) - 자활지원센터 인턴십 참여자 상해보험 가입비용 집행 가능 - 성매매피해상담소의 간병비 지원규정 신설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소 업무시간 규정 완화(09:00~18:00→8시간) - 금융기관 계좌개설 불가능할 경우 직업훈련 수당 현금지급 가능 - 기능보강비 상담소 시설임차료(전세보증금) 지원 규정 신설 - 현장지원사업 상담활동비 지급 규정 신설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운영비(사무실 임차료 및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월 25만원(연 300만원) 초과 시 지자체 승인으로 집행 가능 - 자활지원센터 일자리제공사업 참여자지원금 인상 (시간당 6,470원 → 7,030원) - 외국인 성매매피해자 일자리제공사업 확대(인턴십프로그램 추가) - 대안교육위탁기관 종사자 변경(센터장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직업훈련개발훈련교사 3명, 사무지원 1명 → 센터장, 교사·직업훈련개발훈련교사 2명, 사무지원 1명) -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 중 청소년지원시설의 치료·회복프로그램 비율 지자체 승인으로 상향(60% 이내 범위 → 지자체 승인으로 60% 이상)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19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12월)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정(12월)
	19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폭력상담소 설치(7월)
	19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 운영비 지원(1월) - 가정폭력피해자 일반치료비 지원(1월)
	2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부 신설로 보건복지부에서 업무이관(1월)
	2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폭력·성폭력 근절 종합대책 마련(3월) -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가정폭력피해자 무료법률 지원사업 협약(12월)
	2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개발·보급(12월)

구 분	주 요 추 진 내 용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89개 상담소)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1월, 4월,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소, 보호시설의 설치 신고·인가권 → 시군구 자치단체장에게 부여 •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 지원 구상권 행사요건 완화 등 -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 무료법률 지원사업 협약(12월)
	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폭력피해자 진료지원 협약식 체결(1월) • 가정폭력피해자와 그 동반아동에 대하여 무료진료 지원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4월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3년) 실태조사 및 초·중·고 예방교육 실시 • 피해아동 거주지의 취학지원 • 상담소 설치·운영기준 강화 등 • 교육훈련시설 신고제 도입 •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 구상권 임의규정으로 변경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연구용역 실시('06.8~'0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자 중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의 폭력 재발률과 배우자 만족도 등 효과성 검증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8년 주거지원사업 시범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부산 2개 지역에 임대주택 21호 공급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09.11.9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폭력피해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 국가나 지자체에서 종사자 보수교육 실시 • 보호시설 입소·퇴소관련 사항을 법률에 규정 • 여성긴급전화 1366 법적 근거 마련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11.1월 시행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시설 입소 피해자 및 동반아동에 대한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등 지원 근거 마련 - 폭력피해여성 지원서비스 개편 추진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1월, 5월,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시설 입소 피해자 및 동반아동에 대한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의료비 등 지원 근거 마련 • 피해자 긴급구조시 경찰관 동행 • 가정폭력관련 시설평가 및 평가결과 지원 등에 반영 • 가정폭력예방, 계도 등을 위한 홍보영상물 제작·배포·송출 근거 마련 • 각급 학교에서의 가정폭력 및 성폭력 등 예방교육 통합실시 • 장애인 가정폭력시설의 종사자 자격기준 개선 - 2010년 가정폭력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16개 시·도 3,800가구 가정폭력피해자 조사 등 - 2010년 여성폭력 관련시설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소, 보호시설, 1366,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등 363개소 평가실시

구 분	주 요 추 진 내 용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 마련(5월, 법무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법경찰관의 긴급임시 조치권 도입 및 피해자 보호명령제 도입 - 주거지원시설 3개 지역 추가 확대(대구, 경기(안산), 제주) - 가족보호시설 설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세 이상 남아를 동반한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한 가족보호시설 설치 운영기관 선정(8개소) - 보호시설 운영비를 절감하여 입소자중 비수급자에게 생계비 지원 -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118개 상담소) -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 - 가정폭력 상담프로그램 운영인력 역량강화 교육 : 390명(양평원 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 상담운영인력 포함 참여인원 : 744명 - 가정폭력을 막는 힘(홍보동영상) 제작, 배포 - 가정폭력 사건 수사관계자를 위한 인권의식교육 시범 실시 (52회 2,272명)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관의 현장출입 및 조사권 도입 -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제도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연구용역(3~9월) -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지원안내서 제작(50,000부) - 가정폭력 사건 수사관계자를 위한 인권의식교육 확대(36,239명) - 10세 이상 남아 동반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가족보호시설 추가 확충(5개) - 폭력피해여성의 주거복지와 자립지원을 위한 주거지원 임대주택 공급 확대(36호) - 보호시설 입소 아동 교육비 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의 수혜자 확대를 위해 가정폭력 상담소 치료회복프로그램 시범사업 실시(12.5~12, 11개 지역별 1개소 운영) - 여성폭력피해 상담소 관리 및 서비스 수준향상 방안연구(9~12월) - 가정폭력 피해 대상과 유형별 치료·회복 프로그램 개발연구 (12.7~13.1월) -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122개 상담소)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개 부처 합동 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 마련(6월) - 2013년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실시 - 10세 이상 남아 동반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가족보호시설 추가 확충 (3개소) - 폭력피해여성의 주거복지와 자립지원을 위한 주거지원 임대주택 공급 확대(40호)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의무화(연 5만원 이내) - 아동교육비, 교복비 지원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교육지원비(부교재비 : 초등·중학생, 학용품비 : 초등·중·고등학생) • 교복비(중·고등학교 신입생, 전학생) - 보호시설에 입소한 비수급자에 대한 비일상적 질병에 대한 의료비 지원 추가

구 분	주 요 추 진 내 용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폭력방지법 일부개정안 시행(14.1.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관 현장출동 의무화, 가정폭력 의무대상기관 확대(학교 →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 경찰관 현장출입·조사 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가정폭력방지법 일부개정안 시행(14.7.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적점검 및 부진기관에 대한 제재조치 마련 - 10세 이상 남아 동반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가족보호시설 추가 확충(2개소) - 폭력피해여성의 주거복지와 자립지원을 위한 주거지원 임대주택 공급 확대(38호)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 건강검진비 신규지원('14.1월~)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 취·창업 지원을 위한 직업훈련비 신규 지원('14.1월~)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세 이상 남아 동반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가족보호시설 추가 확충 (2개소) - 폭력피해여성의 주거복지와 자립지원을 위한 주거지원 임대주택 공급 확대(43호) - 가정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스트레스 치유프로그램 신규운영 지원 - 가정폭력방지법 일부개정안 시행('15.12.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폭력 추방주간(매년 11.25~12.1) 신설 등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력피해여성의 주거복지와 자립지원을 위한 주거지원 임대주택 공급 확대(30호) - 가정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시행('16.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폭력관련 시설 휴·폐지 시 시설 이용자의 권익보호조치 시행 • 가정폭력관련 시설 폐지 시 관할 세무서와 시·군·구 중 한 곳에 폐지 신고서 제출 가능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력피해여성의 주거복지와 자립지원을 위한 주거지원 임대주택 공급 확대(20호) - 가정폭력방지법 일부개정안 국회의결('17.12.5 / '18.6월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폭력피해자 인권보호 관점의 권리보장 강화의 기본이념 신설 •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자립·자활 지원 강화 • 가정폭력상담소를 외국인·장애인 대상 특화 운영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수사·재판과정 동행 등 다양한 지원 규정 • 가정폭력범죄 관련, 피해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 처분 시 벌칙 조항 신설 - 가정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시행('17.11.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전화센터 종사자 자격기준 및 가정폭력피해자 단기보호시설 입소 기간 연장 절차 완화

구 분	주 요 추 진 내 용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시행('18.6.13) • 가정폭력피해자 인권보호 관점의 권리보장 강화의 기본이념 신설 •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자립·자활 지원 강화 • 가정폭력상담소를 외국인·장애인 대상 특화 운영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수사·재판 과정 동행 등 다양한 지원 규정 • 가정폭력범죄 관련, 피해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 처분 시 벌칙 조항 신설 - 폭력피해여성의 주거복지와 자립지원을 위한 주거지원 임대주택 공급 확대(20호) -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 절차 간소화 등 건강지원 강화(1월) -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국비 지원 10개소 확대(10→20개소) - 스토킹, 데이트폭력, 디지털 성폭력 등 다양한 여성폭력 관련 교육 추진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폭력피해자 주거복지와 자립지원을 위한 주거지원 임대 주택 20호 신규 공급 -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국비 지원 10개소 확대(20→30개소) - 가정폭력 일반상담소 국비 지원 15개소 확대(83→98개소)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지원 실시('19.1월~)
여성긴급전화 「1366」	1997	- 위기여성 상담 특수전화번호 지정(12월)
	19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여성 상담특수전화 「1366」 운영 개시(1월) - 120권역에 확대 설치(12월)
	1999	- 142권역에 확대 설치(12월)
	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4권역에 확대 설치(6월) - 전화권역의 광역화에 따라 권역별 통합 추진 • 144권역 → 56권역으로 통합·조정(12월)
	2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부 신설로 보건복지부에서 업무이관(1월) - 전화권역의 통합·조정 완료(6월) : 56권역 → 16권역 - 전담직원 144명 배치 및 인건비 신규지원으로 365일 24시간 운영체계 구축(7월) - 시·도별 지역협의체 운영(7월)
	2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성매매·성폭력피해자보호를 위한 동시통역시스템 도입·운영 (11월) • 제공언어 : 영어, 일어, 중국어, 러시아어
	2003	- 여성긴급전화1366 주요상담사례집 발간(12월)
	2006	- 이주여성 긴급전화1366센터 설치(11월)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구 차원에서 지역협의체 확대(3월) - 1366 상담시스템 통계프로그램 개발 및 수정(4월)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 ('09.11.9 시행) • 여성긴급전화 1366 법적 근거 마련
2010	- 현장상담원 센터별 2명 배치	

구 분	주 요 추 진 내 용	
여성긴급전화 「1366」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전화 1366센터 외국어 응대 매뉴얼 발간(2월) - 여성긴급전화 1366 경기북부센터 개소(6월) -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10주년 기념식 및 세미나 개최(6월)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66 중앙센터(위기여성을 위한 전국단위 대응체계) 설치(9월) - 여성긴급전화 중앙지원단 설치(9월) •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와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센터의 연계 및 지원기능 강화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긴급전화 중앙센터 해외성매매피해자지원을 위한 UIFN 서비스 운용 - 가정폭력 근절과 피해자 초기지원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매뉴얼 개발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센터당 상담원 1명씩 증원(총 17명) - 중앙센터 긴급피난처 신규설치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당 긴급피난처 전담인력 1명씩 신규배치(총 18명)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당 긴급피난처 전담인력 1명씩 증원(총 18명 증원)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당 긴급피난처 전담인력 1명씩 증원(총 18명 증원)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66지역센터 상담인력 증원(총 34명) - 1366통합상담시스템 구축 및 운영(1월)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66 운영매뉴얼 및 상담매뉴얼 제작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 및 예방	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지원 시작 : 2개소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 설치·운영(11월) • 7개 국어 지원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지원 확대 : 4개소 - 이주여성긴급전화 1366 홈페이지 오픈(1월)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으로 센터 명칭 변경(6월)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상담원 및 지원언어를 8개 국어로 확대(7월) - 국제결혼 정보제공 프로그램 교육 실시 • 프로그램 연구·개발(8월) • 4개 지역 시범교육 실시(7월) • 전국 확대 실시(12월)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권역별 지역센터 설치(1~2월) • 4개소(수원, 대전, 광주, 부산) - 외국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지원확대 : 18개소 - 국제결혼 행복 프로그램으로 명칭 변경(11월) - 이주여성자활공간터 설치 계획 수립 및 부지선정(서울시 시흥동)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3주년 성과 및 실적분석(12월)

구 분	주 요 추 진 내 용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 및 예방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권역별 지역센터 설치(1~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개소(구미, 전북)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지원언어를 8 → 10개 국어로 확대 - 이주여성 쉼터 18개소 운영 및 기능보강을 통한 환경개선 - 이주여성자활지원센터 개소 및 운영('10년 11월, 서울시 시흥동) - 이주여성 그룹홈 운영 1개소(서울) - 국제결혼 행복 프로그램 운영(2,742명)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야간상담팀 신규 운영(5월) - 이주여성쉼터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전국 확대 실시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야간상담팀 기능 강화(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간상담원 및 상담지원언어 확대 : 12명, 8개 국어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상담언어 확대(2개 국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팔, 라오스 확대 : 총 13개 국어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착신 전환(7월) - 이주여성상담원 수기집 발간(11월) - 이주여성쉼터 확대 운영(4개소) : 총 22개소 - 이주여성보호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의무화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여성긴급지원(1577-1366)센터 다누리콜센터 통합운영 - 이주여성쉼터 확대 운영(2개소) : 총 24개소 - 이주여성그룹홈 확대 운영(1개소) : 총 2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시설 27개소 : 쉼터(24개소), 그룹홈(2개소), 자활지원센터(1개소)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여성쉼터 확대 운영(1개소) : 총 25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시설 28개소 : 쉼터(25개소), 그룹홈(2개소), 자활지원센터(1개소)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여성 폭력예방 홍보 책자 제작·배포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여성쉼터(1개소), 그룹홈(1개소) 확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시설 30개소 : 쉼터(26개소), 그룹홈(3개소), 자활지원센터(1개소) - 의료지원비(산후조리비) 및 아동양육비(학교준비물비) 지원 내역 확대 - 설치기준 완화(건조장 삭제)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여성쉼터(2개소) 확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시설 32개소 : 쉼터(28개소), 그룹홈(3개소), 자활지원센터(1개소)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신설(5개소)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신설(52명)

구 분	주 요 추 진 내 용	
북한이탈여성 심리치유 프로그램 운영	2013	- 심리치유센터 8개소 지정 (상담실적 실인원 261명, 연인원 1,176명, 프로그램 운영실적 1,391명)
	2014	- 심리치유센터 10개소 지정 (상담실적 실인원 1,318명, 연인원 4,374명, 프로그램 운영실적 1,007명)
	2015	- 심리치유센터 10개소 지정 (상담실적 실인원 1,626명, 연인원 4,481명, 프로그램 운영실적 1,359명)
	2016	- 심리치유센터 10개소 지정 (상담실적 실인원 1,811명, 연인원 4,591명, 프로그램 운영실적 1,219명)
	2017	- 심리치유센터 10개소 지정 (상담실적 실인원 1,674명, 연인원 3,215명, 프로그램 운영실적 1,699명)
	2018	- 심리치유센터 10개소 지정 (상담실적 실인원 1,947명, 연인원 4,906명, 프로그램 운영실적 2,082명)
	2019	- 심리치유센터 10개소 지정 * 실적은 집계 중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1991	- 국내최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김학순 할머니(당시 67세) 기자회견
	1993	-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 제정('93.6.11 제정·시행)
	1998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특별지원금 인상(5,000천원 → 43,000천원) 및 특별지원금 기 지급자에 대한 추가 지급(38,000천원)
	2001	-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업무 이관('01.1월)
	2002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및 기념사업 등 지원 등 근거 신설 ('02.12.11 개정) - 월 평균 지원금 623천원 ※ 생활안정지원금 월 535천원, 건강치료 등 월 평균 88천원
	2003	- 월 평균 지원금 719천원(전년대비 96천원 인상) ※ 생활안정지원금 월 600천원, 건강치료 등 월 119천원
	2004	- 월 평균 지원금 754천원(전년대비 35천원 인상) ※ 생활안정지원금 월 640천원, 건강치료 등 월 평균 114천원
2005	- 피해자 국적회복 등 지원 및 간병인 지원 근거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 ('05.7.29.개정, '06.1.30.시행) - 월 평균 지원금 822천원(전년대비 68천원 인상) ※ 생활안정지원금 월 700천원, 건강치료 등 월 평균 122천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e-역사관」 개관 및 운영	

구 분	주 요 추 진 내 용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평균 지원금 1,088천원(전년대비 63천원 인상) ※ 생활안정지원금 월 800천원, 간병비 월 평균 137천원, 건강치료 등 월 평균 151천원 - 독립기념관내 일본군'위안부' 피해 관련 전시물 보강 예산(5억원) 지원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맞춤형 치료사업 개편 ※ (개편 전)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민간단체·시설 등에 개별지원 → (개편 후) 한국 여성인권진흥원(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에서 사업 수행 및 지원체계 일원화 - 월 평균 지원금 1,259천원(전년대비 59천원 인상) ※ 생활안정지원금 월 908천원, 간병비 월 평균 168천원, 건강치료 등 월 평균 183천원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지원 근거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12.12.18.개정·시행) - 월 평균 지원금 1,322천원(전년대비 63천원 인상) ※ 생활안정지원금 월 953천원, 간병비 월 평균 177천원, 건강치료 등 월 평균 192천원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하여 운영비용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13.5.28.개정, '13.11.29.시행) - 월 평균 지원금 1,383천원(전년대비 61천원 인상) ※ 생활안정지원금 월 982천원, 간병비 월 평균 182천원, 건강치료 등 월 평균 219천원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안정지원대상자 등록 신청을 부양의무자 등이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14.3.24.개정, '14.9.25.시행)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지방자치단체간 1대 1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월 평균 지원금 1,640천원(전년대비 257천원 인상) ※ 생활안정지원금 월 1,012천원, 간병비 월 평균 328천원, 건강치료 등 월 평균 300천원 - 나눔의 집 역사관 리모델링 및 추모관 건립 등 예산(12억원) 지원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평균 지원금 1,853천원(전년대비 213천원 인상) ※ 생활안정지원금 월 1,043천원, 간병비 월 454천원, 건강치료 등 월 356천원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평균 지원금 2,694천원(전년대비 841천원 인상) ※ 생활안정지원금 월 1,260천원, 간병비 월 1,055천원, 건강치료 등 월 379천원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평균 지원금 2,775천원(전년대비 81천원 인상) ※ 생활안정지원금 월 1,298천원, 간병비 월 1,087천원, 건강치료 등 월 390천원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평균 지원금 3,237천원(전년대비 462천원 인상) ※ 생활안정지원금 월 1,337천원, 간병비 월 1,120천원, 건강치료 등 월 780천원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평균 지원금 3,583천원(전년대비 346천원 인상) ※ 생활안정지원금 월 1,404천원, 간병비 월 1,360천원, 건강치료 등 월 819천원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평균 지원금 3,853천원(전년대비 270천원 인상) ※ 생활안정지원금 월 1,474천원, 간병비 월 1,519천원, 건강치료 등 월 860천원 	

구 분	주 요 추 진 내 용	
학교 및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운영	2010	- 『학교에서의 성인지적 예방교육』 교사용 교안 개발
	2011	- 학교에서의 성 인권 교육 2개 시·도(경기·충남) 시범 운영 실시
	2012	- 학교에서의 성 인권 교육 4개 시·도(경기·충남·경북·전북) 확대 -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4개 시·도(인천·대전·경기·경남) 시범 실시 - 장애유형별 성 인권 교육 매뉴얼(지적, 시각, 청각 장애) 매뉴얼 개발
	2013	- 학교에서의 성 인권 교육 5개 시·도(경남·전북·경북·충남·제주) 확대 -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12개 시·도(서울·부산·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전남·경북·경남) 확대 - 학교에서의 성 인권 교육(초등 고학년용) 교사용 교수·학습안 및 학생용 핸드북 제작
	2014	- 학교에서의 성 인권 교육 7개 시·도(서울·부산·경기·경북·경남·전북·제주) 확대 -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14개 시·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강원·충북·충남·전남·경북·경남·제주) 확대 - 학교에서의 성 인권 교육(유아용, 초등학교 저학년용, 중학교용, 고등학교용 총 4종) 교사용 교수·학습안 및 학생용 핸드북 제작(~15년)
	2015	-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전국(17개 시·도) 확대
	2016	- 학교에서의 성 인권 교육 8개 시·도(서울, 부산,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확대
	2017	-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교사 및 강사 대상 가이드북 제작
	2018	- 중·고등학생용 성 인권 교재 개편으로 성 인권 교육 내실화 ※ 중학교 3개지역(경북, 충남, 제주), 고등학교 2개지역(경북, 충남)
청소년성문화 센터 설치·운영	2007	- 청소년성문화센터 표준콘텐츠 개발 -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07년 21개소) - 노동부 지원 사회적일자리창출<청소년성교육전문가>사업 지원(20억, 175명)
	2008	- 신규시설 8개소 설치(고정형 29개소)
	2009	- 신규시설 설치 및 전문강사 예산추가확보(고정형 35개소, 전문강사 64명)
	2010	- 신규시설 설치 및 전문강사 3명(고정형 38개소, 전문강사 108명)
	2011	- 이동형 신규시설 1개소 설치(고정형 41개소, 이동형 1개소 등 42개소)
	2012	- 이동형 신규시설 2개소 설치(고정형 42개소, 이동형 2개소 등 44개소)
	2013	- 신규시설 6개소 설치(고정형 43개소, 이동형 7개소 등 50개소)

구 분	주 요 추 진 내 용	
청소년성문화 센터 설치·운영	2014	- 신규시설 4개소 설치(고정형 45개소, 이동형 9개소 등 54개소)
	2015	- 신규시설 4개소 설치(고정형 48개소, 이동형 9개소 등 57개소) * 1개소 폐쇄 - 청소년성문화센터 프로그램(SAY매뉴얼)을 변화된 상황에 맞게 리뉴얼
	2016	- 신규시설 2개소 설치(고정형 48개소, 이동형 11개소 등 59개소)
	2017	- 고정형 48개소, 이동형 10개소 등 58개소 -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실태와 발전방안 연구
	2018	- 고정형 47개소, 이동형 11개소 등 58개소
	2019	- 고정형 47개소, 이동형 11개소 등 58개소 - 이동형 청소년성문화센터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2013	- 폭력예방 교육지원 전담기관 설치·운영 - 비의무 일반국민 대상 찾아가는 성폭력예방교육 실시 - 10개 시·도 10개 지역 교육지원기관 지정·운영
	2014	-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법적근거 신설(성폭력방지법 제5조의2) - 비의무 일반국민 대상 찾아가는 가정폭력예방교육 실시
	2015	- 지역 교육지원기관 전국 확대 및 지자체 보조 사업으로 전환 - 17개 시·도 18개 지역 교육지원기관 지정·운영
	2016	- 도서벽지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시범운영 실시
	2017	- 도서벽지, 안전취약지역 등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확대 실시
	2018	- 문화예술인 등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신규 교육 대상 발굴 실시
	2019	- 체육인, 이주민 등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신규 교육 대상 발굴 실시

Ⅲ. 시설 및 상담소 현황

(2020년 1월 기준)

번호	시 설 별	시설수	대 상	보호기간(최대)	비고
1	성폭력피해 상담소	168	성폭력 피해자		이용 시설
2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일반, 장애인, 특별지원, 자립지원 공동생활)	32	성폭력 피해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1년+1년6월) • 장애인(2년+회복시) • 특별지원(18세+2년) • 자립지원(2년+2년) 	생활 시설
3	해바라기센터	40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이용 시설
4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일반·청소년)	39	성매매피해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1년+1년6월) • 청소년(19세가 될 때까지+2년) 	생활 시설
5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12	탈성매매 한 자로서 자활조건이 성숙되었다고 판단되는 자	• 2년+2년	생활 시설
6	대안교육 위탁기관	2	청소년 성매매피해자 등	• 1년(1년 단위로 최대 3년까지 연장가능)	이용 시설
7	외국인 여성 지원시설	1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	• 1년(수사·소송진행 중인 경우 이에 필요한 기간까지 연장)	생활 시설
8	자활지원센터	12	자활의 기반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는 탈성매매 여성		이용 시설
9	성매매피해상담소	30	성매매피해자 등		이용 시설
10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 시설	32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피해이주여성 및 동반자녀	• 2년 이내	생활 시설
11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5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피해이주여성 및 동반자녀		이용 시설
12	가정폭력상담소 (통합상담소)	208 (40)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성폭력 등 피해자)		이용 시설
13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66	가정폭력피해여성과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월(+3월 2회) ※ 장기시설: 2년 이내 	생활 시설
14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18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피해자		이용 시설
15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334호	가정·성폭력 피해여성	• 2년(+2년)	생활 시설
16	청소년성문화센터	58	유아·초·중·고생 부모 등 전국민		이용 시설

IV. 2020년 주요사업 변경 및 신설 내용

1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가. 성폭력 피해자 상담소, 보호시설 운영

- 보호시설(제주) 및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인천) 추가 개소로 피해자 접근성 강화
-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상담원(1명) 추가 배치하여 현장대응력 강화
* ('19년도) 9개월분 인건비 지원 → ('20년도~) 12개월분 인건비 지원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겸직 금지 의무 개선(「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별표2] 개정 '19.9.19. 시행)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에 대해서만 전임 의무를 부과하고, 다른 종사자에 대해서는 다른 업무의 겸임을 허용하도록 개선

2 성매매 피해자 지원

가. 성매매피해자 상담·보호·자활시설 운영 공통지침

- 종사자 인건비 : 27,187천원 → 27,963천원('19년 대비 2.9% 증액)

나.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입소 및 이용

- 비공개 시설의 피해자 접근성 강화를 위한 홍보활동 가능

다. 성매매피해자 상담·보호·자활시설 운영 개별지침

- 시설 공통
 - 시설운영비(사무실 임차료 및 전세보조금 대출이자) 월 25만원(연300만원) 초과시 지자체 승인으로 집행 가능
- 자활지원센터
 -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의 일자리제공사업 확대(인턴십 프로그램 추가)
 - 일자리제공사업 참여자지원금 인상(시간당 6,470원 → 7,030원)

- 대안교육위탁기관
 - 센터장 직위 신설(교사·직업훈련개발훈련교사 3명, 사무지원 1명 → 센터장, 교사·직업훈련개발훈련교사 2명, 사무지원 1명)

라.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

-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범위 확대
 - 청소년 지원시설은 지자체 승인 시 구조지원사업 예산 총액의 60% 이상 집행 가능

3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 가정폭력피해자 주거복지와 자립지원을 위한 주거지원 임대주택 10호 신규 공급

4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확대(4개소 예정)

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강화
 - 생활안정지원금 지급(매월 정액, 월 1,474천원)
 - * ('19) 월 1,404천원 → ('20) 월 1,474천원
 - 간병인 지원금 지급(이용 실적에 따른 사후정산, 월 평균 1,519천원)
 - * ('19) 월 평균 1,360천원 → ('20) 월 평균 1,519천원
 - 생활안정지원대상자 등록·결정시 특별지원금 지급(일시금, 43,000천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 의료비·비급여 의료비 지원 한도
 - * ('19) 연 983만원 → ('20) 연 1,032만원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장기요양 입원·치료비 지원

6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성과목표 설정
 - 이용자수 2,299천명(전년실적 대비 0.1% 증가한 목표)
- 예산편성 및 집행
 - 시설 종사자 인건비 증액
 - ※ 센터장 30,867천원 → 31,731천원 / 팀장 23,350천원 → 24,004천원 / 팀원 21,815천원 → 22,426천원
 - ※ 이동형(독립형) 센터장 27,164천원 → 27,924천원 / 운전기사 26,940천원 → 27,694천원

7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 교육 대상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실시 교육(성평등·인권교육)과 연계를 통한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족 등 대상 교육 지원 강화(권역별 1회 이상 실시 필수)
- 예산 지원 및 관리
 - 도서벽지 등 선박 이동이 불가피할 경우 교통비 실비(선박 운임) 지원
- 사업 평가체계 및 배점 반영비율
 - 지도점검(6월), 중간 발표회(7~8월, 20%), 평가 보고서(11월, 80%)

1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

가. 성폭력피해 상담소·보호시설·교육훈련시설 운영

구분	2019년도	2020년도																							
성폭력 피해 상담소	<p>다. 상담소 변경신고(시행규칙 제3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소 운영 주체가 변경될 경우에는 폐지신고 후 새로이 설치 신고를 해야 함. 단, 상담소 운영 주체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동 시설의 운영이 실질적으로 지속된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기존 시설에 준하는 예산지원이 가능함 	<p>다. 상담소 변경신고(시행규칙 제3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소 운영 주체가 변경될 경우에는 폐지신고 후 새로이 설치 신고를 해야 함. 단, 상담소 운영 주체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동 시설의 운영이 실질적으로 지속된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기존 시설에 준하는 예산지원이 가능함 <p>※ 운영주체 변경 후 계속적 국비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신규 설치신고 후 여성가족부와 협의</p>																							
	<p>다. 운영시간 및 종사자 복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5일, 평일 8시간 이상 운영(근무시간 : 월~금 09:00~18:00) 	<p>다. 운영시간 및 종사자 복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5일, 평일 8시간 이상 운영(근무시간 : 월~금 09:00~18:00) <p>* 시설별 종사자 근무여건을 고려하여 시설장 책임 하에 상담소 운영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 선택제 운용 가능</p>																							
	<p>다. 2019년 보조금 지원 단가(국비+지방비)</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일반상담소</th> <th>장애인상담소</th> </tr> </thead> <tbody> <tr> <td>인건비(4명) 및 운영비</td> <td>107,513</td> <td>107,513</td> </tr> <tr> <td>추가지원</td> <td>-</td> <td>37,003 (상담지원인력 및 교통비)</td> </tr> <tr> <td>합계</td> <td>107,513</td> <td>144,516</td> </tr> </tbody> </table> <p>※ 금액은 국비, 지방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국고보조율은 50%임. 단, 평택시는 '주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70% 국비 지원함</p> <p>※ 각 지자체는 여건에 따라 지방비를 추가적으로 확보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 지급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음.</p> <p>※ 신규 추가 지원인력(개소당 1명)의 인건비는 채용기간을 고려하여 9개월분 인건비만 반영</p>	구분	일반상담소	장애인상담소	인건비(4명) 및 운영비	107,513	107,513	추가지원	-	37,003 (상담지원인력 및 교통비)	합계	107,513	144,516	<p>다. 2020년 보조금 지원 단가(국비+지방비)</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일반상담소</th> <th>장애인상담소</th> </tr> </thead> <tbody> <tr> <td>인건비(4명) 및 운영비</td> <td>119,710</td> <td>119,710</td> </tr> <tr> <td>추가지원</td> <td>-</td> <td>38,336 (상담지원인력 및 교통비)</td> </tr> <tr> <td>합계</td> <td>119,710</td> <td>158,406</td> </tr> </tbody> </table> <p>※ 금액은 국비, 지방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국고보조율은 50%임. 단, 평택시는 '주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70% 국비 지원함</p> <p>※ 각 지자체는 여건에 따라 지방비를 추가적으로 확보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음.</p>	구분	일반상담소	장애인상담소	인건비(4명) 및 운영비	119,710	119,710	추가지원	-	38,336 (상담지원인력 및 교통비)	합계	119,710
구분	일반상담소	장애인상담소																							
인건비(4명) 및 운영비	107,513	107,513																							
추가지원	-	37,003 (상담지원인력 및 교통비)																							
합계	107,513	144,516																							
구분	일반상담소	장애인상담소																							
인건비(4명) 및 운영비	119,710	119,710																							
추가지원	-	38,336 (상담지원인력 및 교통비)																							
합계	119,710	158,406																							
재무 회계 관리 및 2020년 국고 보조금 지원 내역																									

구 분		2019년도	2020년도
성폭력 피해 상당소	재무 회계 관리 및 2020년 국고 보조금 지원 내역	<p>라. 보조금 집행 기준</p> <p>1) 인건비 및 운영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사자 인건비는 인건비 및 운영비 총액의 80~90%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음 - 상당소 개소당 4명의 인건비를 지원함(전년대비 1명의 인건비 추가 지원, 단 추가 지원인력에 대해서는 채용기간을 고려하여 9개월분의 인건비만 반영) ※ 상당소는 인력 총원이 됨에 따라,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수사·법률 동행 지원, 데이트·스토킹 피해에 대한 조기 위기개입 등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 - 인건비는 기본급, 4대보험 기관 부담금, 퇴직급여적립금, 초과근무수당을 포함함. - 1호봉 종사자의 기본급은 2019년 기준 최저임금액(8,350원×209시간=1,745,150원) 이상이 되도록 편성해야 함 	<p>라. 보조금 집행 기준</p> <p>1) 인건비 및 운영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사자 인건비는 인건비 및 운영비 총액의 80~90%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음 - 상당소 개소당 4명의 인건비를 지원함 - 인건비는 기본급, 4대보험 기관 부담금, 퇴직급여적립금, 초과근무수당을 포함함. - 1호봉 종사자의 기본급은 2020년 기준 최저임금액(8,590원×209시간=1,795,310원) 이상이 되도록 편성해야 함
		<p>라. 보조금 집행 기준</p> <p>1) 인건비 및 운영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비는 인건비 및 운영비 총액의 10~20%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집행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항목을 포함함 -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운영비 내에서 슈퍼비전 또는 종사자 소진방지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전문상담, 치료 프로그램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 (종사자 소진방지 관련은 연간 1인당 20만원 범위 내 사용 가능) ※ 지원 가능 항목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상담·치료, 개인 및 집단 상담·심리치료, 힐링 프로그램 교육 등 프로그램화된 것은 참여지원 가능 (단순 여행이나 영화 관람은 지원 불가, 단 여행·영화관람도 소진방지를 위한 프로그램화한 경우 가능) - '19년 인력이 충원됨 따라 사무물품 등 구입 한시적 허용(연간 20만원 범위 내) 	<p>라. 보조금 집행 기준</p> <p>1) 인건비 및 운영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비는 인건비 및 운영비 총액의 10~20%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집행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항목을 포함함 -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운영비 내에서 슈퍼비전 또는 종사자 소진방지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전문상담, 치료 프로그램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 (종사자 소진방지 관련은 연간 1인당 20만원 범위 내 사용 가능) ※ 지원 가능 항목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상담·치료, 개인 및 집단 상담·심리치료, 힐링 프로그램 교육 등 프로그램화된 것(상당소 자체 프로그램 포함)은 참여지원 가능(단순 여행이나 영화 관람은 지원 불가, 단 여행·영화관람도 소진방지를 위한 프로그램화한 경우 가능)

구 분		2019년도	2020년도
성폭력 피해 상담소	재무 회계 관리 및 2020년 국고 보조금 지원 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지원인력(1명)의 <u>인건비(연간 24,990천원)</u> 추가 지원함 - 기본급, 4대보험 기관부담금, 퇴직급여적립금, 초과근무수당을 포함함. 다만 기본급이 2019년 기준 <u>최저 임금액(8,350원×209시간 = 1,745,150원)</u> 이상이 되도록 편성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지원인력(1명)의 <u>인건비(연간 26,306천원)</u> 추가 지원함 - 기본급, 4대보험 기관부담금, 퇴직급여적립금, 초과근무수당을 포함함. 다만 기본급이 2020년 기준 <u>최저 임금액(8,590원×209시간 = 1,795,310원)</u> 이상이 되도록 편성해야 함
	보고 사항	<p>나. 협조사항 〈신설〉</p>	<p>나. 협조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여성 성폭력 피해자 대상 <긴급 사업장변경제도> 안내 협조 - 상담 등을 통해 외국인노동자 대상 사용자의 성폭행 피해 등을 인지 시 사업장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긴급 사업장 변경제도> 안내 협조 (‘19.2.1. 변경고시 시행)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보호 시설 인력 및 복무	<p>가. 종사자 배치기준</p> <p>※ 종사자는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음. 다만, 일반·장애인·특별 지원 보호시설의 장은 소속 법인·단체가 운영하는 (장애인)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의 장을 겸임할 수 있음</p>	<p>가. 종사자 배치기준</p> <p>※ 보호시설의 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음. 다만, 일반·장애인·특별지원 보호시설의 장은 소속 법인·단체가 운영하는 (장애인)자립지원 공동 생활시설의 장을 겸임할 수 있음</p>
		<p>다. 운영시간 및 종사자 복무 〈신설〉</p>	<p>다. 운영시간 및 종사자 복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원은 시설 유형별 특성, 규모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운용 가능 - 상담보조(반드시 상담원 자격 기준을 충족한 자에 한함) - 기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별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용 ※ 예시) 활동보조(장애인 시설 등), 행정 지원 업무, 시설관리 업무, 식사보조(조리원) 등

구 분		2019년도	2020년도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보호 시설 입소자 관리	<p>나. 퇴소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시설의장은 아래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 퇴소를 명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입소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자해, 폭력 등), 이 경우, 독단적으로 결정하여서는 안 되며, 시·군·구와 협의한 후 퇴소토록 조치함. 	<p>나. 퇴소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시설의장은 아래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 퇴소를 명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입소자 또는 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자해, 폭력, 내부규정 위반 및 그 밖에 단체 생활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는 입소자 및 이용자 등). 이 경우, 독단적으로 결정하여서는 안 되며, 시·군·구와 협의한 후 퇴소토록 조치함.
	재무 회계 관리 및 2020년 국고 보조금 지원 내역	<p>다. 2019년 보조금 지원 단가 (국비+지방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 지급내역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액은 국비, 지방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국고보조율은 서울 50%, 그 외 지역은 70%임. 단 비수급자 생계비·교육비·퇴소자립지원금은 국고보조율 100%임 ※ 신규 추가 지원인력(30명)의 인건비는 채용기간을 고려하여 9개월분 인건비만 반영 	<p>다. 2020년 보조금 지원 단가 (국비+지방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 지급내역표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액은 국비, 지방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국고보조율은 서울 50%, 그 외 지역은 70%임. 단 비수급자 생계비·교육비·퇴소자립지원금은 국고보조율 100%임
		<p>라. 보조금 집행기준</p> <p>2) 사업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아래의 기준에 따라 입소자의 특성 등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 가능함 • 아동·청소년 입소자 많은 등의 입소자의 특성으로 인해, 학습 지원비, 의료·법률지원 부대비용 등이 부족할 경우, <u>프로그램비와 직업훈련비지원액 합계의 15% 범위 내에서 생활지원비·학습 지원비·의료법률지원 부대비용</u>으로 사용 가능 	<p>라. 보조금 집행기준</p> <p>2) 사업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아래의 기준에 따라 입소자의 특성 등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 가능함 • 아동·청소년 입소자 많은 등의 입소자의 특성으로 인해, 학습 지원비, 의료·법률지원 부대비용 등이 부족할 경우, <u>프로그램비와 직업훈련비지원액 합계의 30% 범위 내에서 생활지원비·학습 지원비·의료법률지원 부대비용</u>으로 사용 가능
보고 사항	<p>바. 협조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p>바. 협조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여성 성폭력 피해자 대상 <긴급 사업장변경제도> 안내 협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 등을 통해 외국인노동자 대상 사용자의 성폭행 피해 등을 인지 시 사업장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긴급 사업장 변경제도> 안내 협조('19.2.1. 변경고시 시행) 	

구 분		2019년도	2020년도
성폭력 상담원 교육 훈련 시설	교육 훈련 시설의 운영	<p>다. 교육훈련시설 운영 일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강료 수납 및 환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 상한 범위(1인당 35만원 이내)에서 수납할 수 있음 	<p>다. 교육훈련시설 운영 일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강료 수납 및 환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 상한 범위(1인당 35만원 이내, 교재비 포함)에서 수납할 수 있음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및 간병비 지원	의료 지원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소득 의료급여(1, 2종) 수급자의 경우 우선적으로 해당 급여로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자 의료비는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의료기관에 한하여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의료기관 부설 클리닉 혹은 정신건강의학과, 심리학, 상담심리학, 아동심리치료학, 교육심리학을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가 운영하는 심리상담기관도 집행 가능 ※ 피해자가 종전부터 이용해온 기관이거나 피해자가 사는 지역 인근에 심리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적절한 기관이 없는 경우 박사학위 수료자가 운영하는 기관도 예외적으로 집행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소득 의료급여(1, 2종) 수급자의 경우 우선적으로 해당 급여로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자 의료비는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의료기관에 한하여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의료기관 부설 클리닉 혹은 정신건강의학과, 심리학, 상담심리학, 아동심리치료학, 교육심리학을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가 운영하는 심리상담기관도 집행 가능 ※ 피해자가 종전부터 이용해온 기관이거나 피해자가 사는 지역 인근에 심리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적절한 기관이 없는 경우 박사학위 수료자 또는 상담경력이 7년 이상인자가 운영하는 기관도 예외적으로 집행 가능
성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 그램 운영	세부 운영 지침	<p>가. 프로그램 운영 기준 및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단상담 운영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진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자 10인을 기준으로 주진행 1명, 보조진행 1~2인의 강사로 운영 	<p>가. 프로그램 운영 기준 및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단상담 운영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진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자 10인을 기준으로 주진행 1명, 보조진행 1~2인의 강사로 운영(아동청소년, 장애인 집단인 경우 필요에 따라 10인 이하라도 보조강사 1~2인 가능)
가정 폭력· 성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 지원	사업 대상 및 지원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조비 지원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성폭력 피해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자가 다수일 경우, 1인 추가 시마다 20만원씩 추가 지급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조비 지원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성폭력 피해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다수일 경우, 1인 추가 시마다 20만원씩 추가 지급 가능

나.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

구 분		2019년도	2020년도
가정 폭력·성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 지원	사업 대상 및 지원 절차	3. 사업대상 및 지원절차 ○ 구조비 지원 기준 ③ 스토킹, 데이트폭력 피해자지원 ※ 스토킹, 데이트폭력 피해자의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지원	3. 사업대상 및 지원절차 ○ 구조비 지원 기준 ③ 스토킹, 데이트폭력 피해자지원 <u>〈삭 제〉</u>

2 성매매피해자 지원사업

가. 성매매피해자 상담·보호·자활시설 운영 공통지침

구 분	2019년도	2020년도
인건비 편성기준	○ 인건비 지원액 : 27,187천원 / 1인 ('18년 대비 2.8%증)	○ 인건비지원액 : 27,963천원 / 1인 ('19년 대비 2.9%증)

나.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입소 및 이용

구 분	2019년도	2020년도
입소·이용자의 인권보장	○ 입소·이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시설명, 시설 소재지, 종사자 정보, 입소·이용자 정보 등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대안교육위탁기관)	○ 입소·이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시설명, 시설 소재지, 종사자 정보, 입소·이용자 정보 등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대안교육위탁기관) ▶ 다만, 피해자시설 접근성 강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음.

다. 성매매피해자 상담·보호·자활시설 운영 개별지침

구 분	2019년도	2020년도
시설공통 시설 운영비	○ 사무실 월 임차료 및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는 월 25만원(연300만원)한도에서 지자체 승인 없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로 집행 가능	○ 사무실 월 임차료 및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는 월 25만원(연300만원)한도에서 지자체 승인 없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로 집행 가능 ▶ 다만, 지자체에서 집행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승인하는 경우에는 월 25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여 운영비로 집행 가능

구 분		2019년도	2020년도
자활지원 센터	이용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이용자 중 법률소송을 진행 중인 자 ▶ 공동작업장 운영프로그램에 한해 참여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이용자 중 법률소송을 진행 중인 자 ▶ 공동작업장 운영프로그램에 한해 참여가능(삭제)
	일자리 제공 사업	○ 1인당 월 647천원	○ 1인당 월 703천원
대안교육 위탁기관	종사자 수 및 자격 조건	<p>2. 설치기준, 설치절차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등</p> <p>라. 종사자의 수 및 자격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사자의 수 : 4명(정교사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명, 사무지원 1명) ○ 종사자의 자격 <p>3. 국고보조금 지원</p> <p>가. 지원 내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 : 정교사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3명), 사무지원(1명) - 교사 인건비 단가는 지원·상담·자활시설의 상담원 등의 종사자와 동일 	<p>2. 설치기준, 설치절차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등</p> <p>라. 종사자의 수 및 자격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사자의 수 : 4명(센터장, 정교사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2명, 사무지원 1명) ○ 종사자의 자격 - 센터장 : 정교사 또는 직업훈련교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원시설·상담소·자활지원센터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p>3. 국고보조금 지원</p> <p>가. 지원 내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 : 센터장, 정교사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2명), 사무지원(1명) - 센터장, 교사 인건비 단가는 지원·상담·자활시설의 상담원 등의 종사자와 동일

라.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

구 분		2019년도	2020년도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유형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료·회복 프로그램 유형 중 상담 치료에 가족상담 추가
	집행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행방법 - 구조지원사업 예산 총액의 50% 이내에서 집행해야 함 ▶ 단, 청소년지원시설의 경우 시·도별로 청소년 지원시설 전체에 교부되는 구조지원사업 예산 총액의 60%이내의 범위에서 치료·회복프로그램으로 집행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행방법 - 구조지원사업 예산 총액의 50% 이내에서 집행해야 함 ▶ 단, 청소년지원시설의 경우 시·도별로 청소년지원시설 전체에 교부되는 구조지원사업 예산 총액의 60% 이내의 범위에서 치료·회복 프로그램으로 집행 가능하며, 지자체 승인 시 60% 이상 집행 가능

구 분	2019년도	2020년도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 (이동형)여성가족부의 표준 콘텐츠 준수 - 신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시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기관 및 단체의 컨설팅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치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재해대비시설을 갖추어야 함 - 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프로그램 매뉴얼 활용 - 신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시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또는 운영 중인 청소년성문화센터 등 성교육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은 후 시설 설치 																						
운영 기본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목표 <table border="1"> <thead> <tr> <th>성과지표</th> <th>'19년 목표치</th> </tr> </thead> <tbody> <tr> <td>이용자 수</td> <td>2,259천명</td> </tr> <tr> <td>이용자 만족도</td> <td>90점 이상</td> </tr> <tr> <td>보수교육 이수</td> <td>100% 이상</td> </tr> <tr> <td>지역사회 연계</td> <td>전년대비 5% 증가</td> </tr> <tr> <td>언론홍보</td> <td>센터별 반기 1회 이상</td> </tr> </tbody> </table>	성과지표	'19년 목표치	이용자 수	2,259천명	이용자 만족도	90점 이상	보수교육 이수	100% 이상	지역사회 연계	전년대비 5% 증가	언론홍보	센터별 반기 1회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목표 <table border="1"> <thead> <tr> <th>성과지표</th> <th>'20년 목표치</th> </tr> </thead> <tbody> <tr> <td>이용자 수</td> <td>2,299천명</td> </tr> <tr> <td>이용자 만족도</td> <td>91점 이상</td> </tr> <tr> <td>지역사회 연계</td> <td>센터별 특성에 맞게 수행</td> </tr> <tr> <td>언론홍보</td> <td>센터별 반기 1회 이상</td> </tr> </tbody> </table>	성과지표	'20년 목표치	이용자 수	2,299천명	이용자 만족도	91점 이상	지역사회 연계	센터별 특성에 맞게 수행	언론홍보	센터별 반기 1회 이상
성과지표	'19년 목표치																							
이용자 수	2,259천명																							
이용자 만족도	90점 이상																							
보수교육 이수	100% 이상																							
지역사회 연계	전년대비 5% 증가																							
언론홍보	센터별 반기 1회 이상																							
성과지표	'20년 목표치																							
이용자 수	2,299천명																							
이용자 만족도	91점 이상																							
지역사회 연계	센터별 특성에 맞게 수행																							
언론홍보	센터별 반기 1회 이상																							
예산편성 및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소 지원 예산 : 150,586천원 ○ 예산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항목(인건비, 운영비) 간 변경에 있어서 5명(5명×12월)의 인건비 집행 잔액 중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후 인건비성 경비 및 운영비로 충당할 수 있음 *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는 정당하게 집행해야 하며 변경승인 시 변경사유를 첨부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소 지원 예산 : 154,552천원 ○ 예산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인건비 집행 잔액은 지방 자치단체장의 승인 후 인건비성 경비 또는 운영비로 충당할 수 있음 (단, 운영비는 인건비로 변경 불가) * 총 인건비 집행 잔액 : 입·퇴사 및 결원 등의 사유로 연간 총 인건비 불용이 발생할 경우 잔액 *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는 근로기준법 등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변경승인 시 변경사유를 첨부 * 인건비성 경비 : 시간외근무수당, 직책수당, 정근수당,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명절수당, 연차수당, 성과금 등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집행(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회 또는 각종 단체의 회비, 기타 분담금 지출은 보조금으로 집행 불가 ※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자치단체보조금 교부조건 참조 - 보조금 집행내역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관리하여야 함 * 보조금 집행 관련 서류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함 																						

구 분	2019년도	2020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서 정보공시를 등록해야 함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10, 제36조의2,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근거하여 불성시공시에 해당하는 경우 제재조치 및 보조금 삭감, 명단 공표가 진행되며, 정보공시 등록 관련 e나라도움 콜센터에 문의
인사관리	<p>〈신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의 자격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6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가 지정하는 신규직원 연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의 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경쟁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시군구 또는 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고 * 다만, 공개채용 공고를 하였으나,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또는 위탁단체) 의 자체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채용 가능 * 직원 채용 시 이력서 상에 가족사항, 취미, 종교 등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금지 ○ 직원의 정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년 기준(만65세)이 지자체 또는 수탁 법인의 인사 규정과 상이할 경우, 직영 센터는 지자체 인사규정, 위탁센터는 수탁 법인 인사규정 우선 적용 ○ 직원의 자격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직무 관련 교육 과정을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함
복무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찾아가는 성교육을 제외한 근무시간 중 외부기관으로 개인적 출강은 센터 업무 활동과 관련된 경우에만 허용되며, 개인당 월 2회(총 6시간)를 넘지 못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찾아가는 성교육 등 성문화센터 고유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의 출강은 가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경우 반드시 관련 자료를 비치하고 이를 증빙하여야 함 - 잦은 출장으로 인해 체험관 성교육 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교육 업무 분담, 교육비 활용 기준 등에 관하여 형평성 있는 센터 자체 규정을 구비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사자가 외출, 조퇴 등 이석 시에는 근무 상황에 반드시 기록, 증빙서류 비치 - 성문화센터 고유 업무 외 외부기관으로의 출강은 센터 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과 관련된 경우에만 허용되며, 개인당 월 2회(총 6시간)를 넘지 못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 사업과 관련한 외부 강의 수강료는 센터 수익금으로 처리 - 그 외 직무관련성이 없는 개인적 출강은 연가처리 하여야 함

구 분	2019년도	2020년도
시설 등 안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 및 안전조치 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는 자체 안전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장에게 지시하고 안전문제 우려 사항 발생 시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보고 받아 시정명령을 요구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 및 안전조치 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는 매년 자체 안전점검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장에게 지시하고 안전사고 우려 사항 발생 시 수시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보고 받아 시정명령을 할 것 ※ 청소년성문화센터에 안전관리 계획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안내 후 검토, 승인 ※ 안전기준(예시) : 지진, 화재 등 재난에 대비하여 피난, 연소방지 시설 및 물품 구비 등 소방안전시설 기준 준수, 상병자를 위한 응급조치용 비상약품, 구호기구 등을 갖출 것, 위험한 장소에는 위험표지물 등 안내문 설치, 안전사고, 응급환자 발생 등에 대비하여 긴급 수송 대책마련, 센터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실시, 화재보험 및 상해보험 등 가입, 센터별 안전관리 책임자 지정, 자체 안전대응매뉴얼 작성 관리 및 모의훈련실시(반기별 1회 이상)
교육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성문화센터 전직원은 현장 전문 인력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성문화센터 종사자는 직무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역량강화 사업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성교육 기관 종사자에 대한 역량 강화사업 운영 (이하 내용) 	<p><삭 제></p>
한국 청소년 성문화 센터 협의회 구성·운영 홈페이지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홈페이지 이용 ○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구성·운영 (이하 내용) 	<p><삭 제></p> <p><삭 제></p>
교육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 및 공개 될 교재, 매뉴얼, 프로그램, 영상 등은 내·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교육프로그램 전문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 ○ 청소년성문화센터는 교육에 사용하는 교재 및 교육프로그램, 동영상 등을 청소년성문화센터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함 	<p><삭 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성문화센터는 교육에 사용하는 교재 및 교육프로그램, 동영상 등을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 협의회 또는 청소년성문화센터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함

구 분	2019년도	2020년도
사업평가 및 현장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가족부장관은 각 시·도 및 청소년성문화센터에 대한 사업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현장점검 역할분담 및 실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반기별로 운영실태 점검결과보고서 제출(상반기 7.31, 하반기 11.30일까지) - (여성가족부) 반기별 지역별 1개 센터 이상 점검(예정) - (지방자치단체) 여성가족부 점검 대상이 아닌 경우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전반적 운영 실태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로 공문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별 반기별로 최소 1~2개소 이상 운영실태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평가: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평가(3년 주기, 2022년 예정) ○ 현장점검 역할분담 및 실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 연 1회 이상 소속 센터 점검 후 점검결과보고서 제출(9.30일까지) - (여성가족부) 연 1회 이상 점검(점검센터, 시기 추후 통보) - (청소년성문화센터) 주요점검 내용 관련 서류 준비 등 점검 협조
직영 및 위탁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두고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 ※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등) <p>〈삭 제〉</p>
기타 행정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시설 개관 지연으로 인한 평가상의 불이익, 민원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규 시설 설치 각 시·도는 개관시기를 준수할 것 ○ 신규시설을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승인 후, 개관 시까지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진행상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할 것 	<p>〈삭 제〉</p> <p>〈삭 제〉</p>

4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구 분		2019년도	2020년도											
가정 폭력 상담소	상담소 개요	<신 설>	1. 상담소 개요 나. 가정폭력 상담소의 업무 - 가정폭력으로 취업, 직업훈련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취업 등 자립에 관한 상담 및 정보제공											
	상담소 의 인력 및 복무	4. 상담소의 인력 및 복무 가. 종사자 자격기준 ※ 상담원 자격요건의 특례 <table border="1" data-bbox="427 689 858 1429"> <tr> <th>상담원 자격요건의 특례(수습직원)</th> </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자격요건을 갖추었으나 가정폭력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수습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음 - 수습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정하며, 수습기간 중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6개월 중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점에 수습직원을 정직원으로 전환할 수 있음 </td> </tr> <tr> <td><신 설></td> </tr> <tr> <td><신 설></td> </tr> </table>	상담원 자격요건의 특례(수습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자격요건을 갖추었으나 가정폭력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수습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음 - 수습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정하며, 수습기간 중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6개월 중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점에 수습직원을 정직원으로 전환할 수 있음 	<신 설>	<신 설>	4. 상담소의 인력 및 복무 가. 종사자 자격기준 ※ 상담원 자격요건의 특례 <table border="1" data-bbox="890 689 1321 1429"> <tr> <th>상담원 자격요건의 특례(수습직원)</th> </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 다른 자격요건을 갖추었으나 가정폭력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수습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음 - 수습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정하며, 수습기간 중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6개월 중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점에 수습직원을 정직원으로 전환할 수 있음 ○ (절차) 특례채용은 상담원 채용공고를 2회 이상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시자 또는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 3차 공고시부터 적용 가능함 ○ (관리) 시설은 수습직원을 특례채용한 경우 이를 시·도 또는 시·군·구에 즉시 보고하고, 시·도 또는 시·군·구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현장 점검 시 채용의 공정성, 6개월 내 교육과정 이수 여부 등을 반드시 점검 </td> </tr> </table>	상담원 자격요건의 특례(수습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 다른 자격요건을 갖추었으나 가정폭력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수습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음 - 수습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정하며, 수습기간 중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6개월 중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점에 수습직원을 정직원으로 전환할 수 있음 ○ (절차) 특례채용은 상담원 채용공고를 2회 이상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시자 또는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 3차 공고시부터 적용 가능함 ○ (관리) 시설은 수습직원을 특례채용한 경우 이를 시·도 또는 시·군·구에 즉시 보고하고, 시·도 또는 시·군·구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현장 점검 시 채용의 공정성, 6개월 내 교육과정 이수 여부 등을 반드시 점검 					
	상담원 자격요건의 특례(수습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자격요건을 갖추었으나 가정폭력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수습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음 - 수습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정하며, 수습기간 중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6개월 중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점에 수습직원을 정직원으로 전환할 수 있음 														
<신 설>														
<신 설>														
상담원 자격요건의 특례(수습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 다른 자격요건을 갖추었으나 가정폭력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수습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음 - 수습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정하며, 수습기간 중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6개월 중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점에 수습직원을 정직원으로 전환할 수 있음 ○ (절차) 특례채용은 상담원 채용공고를 2회 이상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시자 또는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 3차 공고시부터 적용 가능함 ○ (관리) 시설은 수습직원을 특례채용한 경우 이를 시·도 또는 시·군·구에 즉시 보고하고, 시·도 또는 시·군·구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현장 점검 시 채용의 공정성, 6개월 내 교육과정 이수 여부 등을 반드시 점검 														
국고 보조금 지원 내용	가. 2019년도 지원내역 및 금액 등 (단위 : 천원) <table border="1" data-bbox="427 1541 858 1832"> <tr> <th>통합상담소 (종사자 6인 기준)</th> <th>일반상담소 (종사자 4인 기준)</th> <th>장애인상담소 추가지원 (개소당)</th> </tr> <tr> <td>174,730</td> <td>116,158</td> <td>상담원 (1인): 25,230 교통비: 12,099</td> </tr> </table>	통합상담소 (종사자 6인 기준)	일반상담소 (종사자 4인 기준)	장애인상담소 추가지원 (개소당)	174,730	116,158	상담원 (1인): 25,230 교통비: 12,099	가. 2020년도 지원내역 및 금액 등 (단위 : 천원) <table border="1" data-bbox="890 1541 1321 1832"> <tr> <th>통합상담소 (종사자 6인 기준)</th> <th>일반상담소 (종사자 4인 기준)</th> <th>장애인상담소 추가지원 (개소당)</th> </tr> <tr> <td>183,813</td> <td>122,201</td> <td>상담원 (1인): 26,750 교통비: 12,099</td> </tr> </table>	통합상담소 (종사자 6인 기준)	일반상담소 (종사자 4인 기준)	장애인상담소 추가지원 (개소당)	183,813	122,201	상담원 (1인): 26,750 교통비: 12,099
통합상담소 (종사자 6인 기준)	일반상담소 (종사자 4인 기준)	장애인상담소 추가지원 (개소당)												
174,730	116,158	상담원 (1인): 25,230 교통비: 12,099												
통합상담소 (종사자 6인 기준)	일반상담소 (종사자 4인 기준)	장애인상담소 추가지원 (개소당)												
183,813	122,201	상담원 (1인): 26,750 교통비: 12,099												

구 분		2019년도	2020년도			
가정 폭력 상담소	국고 보조금 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사자 인건비는 지원 예산총액의 80~90%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기본급, 4대보험 자부담분 및 기관부담금, 퇴직적립금, 초과근무수당을 포함함. 다만, 1호봉 종사자의 기본급이 2019년 기준 최저임금액(8,350원×209시간=1,745,150원) 이상이 되도록 편성해야 함 ○ 상담지원인력(1명) 인건비 연간 25,230천원 추가 지원 - 1인당 지원액은 기본급, 4대보험 자부담분 및 기관 부담금, 퇴직적립금, 초과근무수당을 포함함. 다만, 1호봉 종사자의 기본급이 2019년 기준 최저임금액(8,350원×209시간=1,745,150원) 이상이 되도록 편성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사자 인건비는 지원 예산총액의 80~90%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기본급, 4대보험 자부담분 및 기관부담금, 퇴직적립금, 초과근무수당을 포함함. 다만, 1호봉 종사자의 기본급이 2020년 기준 최저임금액(8,590원×209시간=1,795,310원) 이상이 되도록 편성해야 함 ○ 상담지원인력(1명) 인건비 연간 26,750천원 추가 지원 - 1인당 지원액은 기본급, 4대보험 자부담분 및 기관 부담금, 퇴직적립금, 초과근무수당을 포함함. 다만, 1호봉 종사자의 기본급이 2020년 기준 최저임금액(8,590원×209시간=1,795,310원) 이상이 되도록 편성해야 함 			
	기타 행정 사항	<신 설>	○ 가정폭력 상담소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이 지침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당해연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를 준용할 수 있음			
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설치 기준	<신 설>	○ (장애인 피해자 지원시설의 경우) 장애인 접근이 가능한 시설 구비 노력			
	보호 시설의 인력 및 복무	<p>4. 보호시설의 인력 및 복무</p> <p>가. 종사자 자격기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상담원 자격요건의 특례(수습직원)</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자격요건을 갖추었으나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수습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음 - 수습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정하며, 수습기간 중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6개월 중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점에 수습직원을 정직원으로 전환할 수 있음 </td> </tr> </tbody> </table> <p><신 설></p> <p><신 설></p>	상담원 자격요건의 특례(수습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자격요건을 갖추었으나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수습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음 - 수습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정하며, 수습기간 중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6개월 중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점에 수습직원을 정직원으로 전환할 수 있음 	<p>4. 보호시설의 인력 및 복무</p> <p>가. 종사자 자격기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상담원 자격요건의 특례(수습직원)</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 다른 자격요건을 갖추었으나 가정폭력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수습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음 - 수습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정하며, 수습기간 중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6개월 중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점에 수습직원을 정직원으로 전환할 수 있음 ○ (절차) 특례채용은 상담원 채용공고를 2회 이상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시자 또는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 3차 공고시부터 적용 가능함 ○ (관리) 시설은 수습직원을 특례채용한 경우 이를 시·도 또는 시·군·구에 즉시 보고하고 시·도 또는 시·군·구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현장점검 시 채용의 공정성, 6개월 내 교육과정 이수 여부 등을 반드시 점검 </td> </tr> </tbody> </table>	상담원 자격요건의 특례(수습직원)
상담원 자격요건의 특례(수습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자격요건을 갖추었으나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수습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음 - 수습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정하며, 수습기간 중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6개월 중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점에 수습직원을 정직원으로 전환할 수 있음 						
상담원 자격요건의 특례(수습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 다른 자격요건을 갖추었으나 가정폭력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수습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음 - 수습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정하며, 수습기간 중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6개월 중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점에 수습직원을 정직원으로 전환할 수 있음 ○ (절차) 특례채용은 상담원 채용공고를 2회 이상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시자 또는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 3차 공고시부터 적용 가능함 ○ (관리) 시설은 수습직원을 특례채용한 경우 이를 시·도 또는 시·군·구에 즉시 보고하고 시·도 또는 시·군·구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현장점검 시 채용의 공정성, 6개월 내 교육과정 이수 여부 등을 반드시 점검 						

구 분		2019년도	2020년도																																																																													
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운영 위원회 구성·운영	○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그 밖에 시설의 운영, 사회복지 또는 자립지원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국고 보조금 지원 내용	<p>다. 인건비, 운영비 지원 기준 * 일반보호시설 (단위: 천원/년, 지방비포함)</p> <table border="1"> <thead> <tr> <th>정 원</th> <th>종사자수</th> <th>지원액</th> </tr> </thead> <tbody> <tr> <td>10인 이하 시설</td> <td>4명</td> <td>104,616</td> </tr> <tr> <td rowspan="4">11~30인 이하</td> <td>15인 이하</td> <td>131,207</td> </tr> <tr> <td>20인 이하</td> <td>139,131</td> </tr> <tr> <td>25인 이하</td> <td>148,746</td> </tr> <tr> <td>30인 이하</td> <td>158,361</td> </tr> <tr> <td>30인 초과</td> <td>6명</td> <td>191,763</td> </tr> </tbody> </table> <p>* 가족보호시설</p> <table border="1"> <thead> <tr> <th>정 원</th> <th>종사자수</th> <th>지원액</th> </tr> </thead> <tbody> <tr> <td>10인 이하 시설</td> <td>4명</td> <td>134,116</td> </tr> <tr> <td rowspan="4">11~30인 이하</td> <td>15인 이하</td> <td>164,668</td> </tr> <tr> <td>20인 이하</td> <td>176,420</td> </tr> <tr> <td>25인 이하</td> <td>188,171</td> </tr> <tr> <td>30인 이하</td> <td>199,923</td> </tr> <tr> <td>30인 초과</td> <td>6명</td> <td>234,749</td> </tr> <tr> <td>40인 초과</td> <td>7명</td> <td>245,743</td> </tr> </tbody> </table> <p>• 장애인보호시설은 추가지원으로 인건비2명(상담원 1명, 취사원 1인) 및 교통비를 개소당 61,579천원(지방비포함/년)을 별도 지원함</p> <p>○ 종사자 인건비는 사업비를 제외한 지원 예산액의 80~90%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기본급, 4대보험 자부담분 및 기관부담금, 퇴직적립금, 초과근무수당을 포함함. 다만, 1호봉 종사자의 기본급이 2019년기준 최저임금액(8,350원 × 209시간=1,745,150원) 이상이 되도록 편성해야 함</p>	정 원	종사자수	지원액	10인 이하 시설	4명	104,616	11~30인 이하	15인 이하	131,207	20인 이하	139,131	25인 이하	148,746	30인 이하	158,361	30인 초과	6명	191,763	정 원	종사자수	지원액	10인 이하 시설	4명	134,116	11~30인 이하	15인 이하	164,668	20인 이하	176,420	25인 이하	188,171	30인 이하	199,923	30인 초과	6명	234,749	40인 초과	7명	245,743	<p>다. 인건비, 운영비 지원 기준 * 일반보호시설 (단위: 천원/년, 지방비포함)</p> <table border="1"> <thead> <tr> <th>정 원</th> <th>종사자수</th> <th>지원액</th> </tr> </thead> <tbody> <tr> <td>10인 이하 시설</td> <td>4명</td> <td>122,500</td> </tr> <tr> <td rowspan="4">11~30인 이하</td> <td>15인 이하</td> <td>150,259</td> </tr> <tr> <td>20인 이하</td> <td>158,183</td> </tr> <tr> <td>25인 이하</td> <td>167,798</td> </tr> <tr> <td>30인 이하</td> <td>177,413</td> </tr> <tr> <td>30인 초과</td> <td>6명</td> <td>211,983</td> </tr> </tbody> </table> <p>* 가족보호시설</p> <table border="1"> <thead> <tr> <th>정 원</th> <th>종사자수</th> <th>지원액</th> </tr> </thead> <tbody> <tr> <td>10인 이하 시설</td> <td>4명</td> <td>153,230</td> </tr> <tr> <td rowspan="4">11~30인 이하</td> <td>15인 이하</td> <td>184,950</td> </tr> <tr> <td>20인 이하</td> <td>196,702</td> </tr> <tr> <td>25인 이하</td> <td>208,453</td> </tr> <tr> <td>30인 이하</td> <td>220,205</td> </tr> <tr> <td>30인 초과</td> <td>6명</td> <td>256,199</td> </tr> <tr> <td>40인 초과</td> <td>7명</td> <td>267,193</td> </tr> </tbody> </table> <p>• 장애인보호시설은 추가지원으로 인건비2명(상담원 1명, 취사원 1인) 및 교통비를 개소당 66,993천원(지방비포함/년)을 별도 지원함</p> <p>○ 종사자 인건비는 사업비를 제외한 지원 예산액의 80~90%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기본급, 4대보험 자부담분 및 기관부담금, 퇴직적립금, 초과근무수당을 포함함. 다만, 1호봉 종사자의 기본급이 2020년 기준 최저임금액(8,590원 × 209시간=1,795,310원) 이상이 되도록 편성해야 함</p>	정 원	종사자수	지원액	10인 이하 시설	4명	122,500	11~30인 이하	15인 이하	150,259	20인 이하	158,183	25인 이하	167,798	30인 이하	177,413	30인 초과	6명	211,983	정 원	종사자수	지원액	10인 이하 시설	4명	153,230	11~30인 이하	15인 이하	184,950	20인 이하	196,702	25인 이하	208,453	30인 이하	220,205	30인 초과	6명	256,199	40인 초과	7명
정 원	종사자수	지원액																																																																														
10인 이하 시설	4명	104,616																																																																														
11~30인 이하	15인 이하	131,207																																																																														
	20인 이하	139,131																																																																														
	25인 이하	148,746																																																																														
	30인 이하	158,361																																																																														
30인 초과	6명	191,763																																																																														
정 원	종사자수	지원액																																																																														
10인 이하 시설	4명	134,116																																																																														
11~30인 이하	15인 이하	164,668																																																																														
	20인 이하	176,420																																																																														
	25인 이하	188,171																																																																														
	30인 이하	199,923																																																																														
30인 초과	6명	234,749																																																																														
40인 초과	7명	245,743																																																																														
정 원	종사자수	지원액																																																																														
10인 이하 시설	4명	122,500																																																																														
11~30인 이하	15인 이하	150,259																																																																														
	20인 이하	158,183																																																																														
	25인 이하	167,798																																																																														
	30인 이하	177,413																																																																														
30인 초과	6명	211,983																																																																														
정 원	종사자수	지원액																																																																														
10인 이하 시설	4명	153,230																																																																														
11~30인 이하	15인 이하	184,950																																																																														
	20인 이하	196,702																																																																														
	25인 이하	208,453																																																																														
	30인 이하	220,205																																																																														
30인 초과	6명	256,199																																																																														
40인 초과	7명	267,193																																																																														

구 분		2019년도	2020년도																													
생계비	<p>〈 2019년도 비수급자 생계비 (1인당) 지급기준 〉</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금 액</th> <th>지 급 시 기</th> </tr> </thead> <tbody> <tr> <td>주·부식비, 피복비</td> <td>252,812원</td> <td>매 월</td> </tr> <tr> <td>월동대책비</td> <td>35,394원</td> <td>10월 지급 (연 1회)</td> </tr> <tr> <td>특별위로금</td> <td>36,300원</td> <td>설·추석 전월 (연 2회) * 수급자 개인별 직접지급</td> </tr> </tbody> </table> <p>※ 일단위 지급액 : 1인당 1일 8,312원</p>		구 분	금 액	지 급 시 기	주·부식비, 피복비	252,812원	매 월	월동대책비	35,394원	10월 지급 (연 1회)	특별위로금	36,300원	설·추석 전월 (연 2회) * 수급자 개인별 직접지급	<p>〈 2020년도 비수급자 생계비 (1인당) 지급기준 〉</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금 액</th> <th>지 급 시 기</th> </tr> </thead> <tbody> <tr> <td>주·부식비, 피복비</td> <td>260,245원</td> <td>매 월</td> </tr> <tr> <td>월동대책비</td> <td>36,434원</td> <td>10월 지급 (연 1회)</td> </tr> <tr> <td>특별위로금</td> <td>37,300원</td> <td>설·추석 전월 (연 2회) * 수급자 개인별 직접지급</td> </tr> </tbody> </table> <p>※ 일단위 지급액 : 1인당 1일 8,556원</p>		구 분	금 액	지 급 시 기	주·부식비, 피복비	260,245원	매 월	월동대책비	36,434원	10월 지급 (연 1회)	특별위로금	37,300원	설·추석 전월 (연 2회) * 수급자 개인별 직접지급				
	구 분	금 액	지 급 시 기																													
	주·부식비, 피복비	252,812원	매 월																													
월동대책비	35,394원	10월 지급 (연 1회)																														
특별위로금	36,300원	설·추석 전월 (연 2회) * 수급자 개인별 직접지급																														
구 분	금 액	지 급 시 기																														
주·부식비, 피복비	260,245원	매 월																														
월동대책비	36,434원	10월 지급 (연 1회)																														
특별위로금	37,300원	설·추석 전월 (연 2회) * 수급자 개인별 직접지급																														
아동 교육 지원비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대 상</th> <th>금 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부교재비</td> <td>초등학생</td> <td>66,000원</td> </tr> <tr> <td>중·고등학생</td> <td>105,000원</td> </tr> <tr> <td rowspan="2">학용품비</td> <td>초등학생</td> <td>50,000원</td> </tr> <tr> <td>중·고등학생</td> <td>57,000원</td> </tr> </tbody> </table>		구 분	대 상	금 액	부교재비	초등학생	66,000원	중·고등학생	105,000원	학용품비	초등학생	50,000원	중·고등학생	57,000원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대 상</th> <th>금 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부교재비</td> <td>초등학생</td> <td>134,000원</td> </tr> <tr> <td>중학생</td> <td>212,000원</td> </tr> <tr> <td>고등학생</td> <td>339,200원</td> </tr> <tr> <td rowspan="2">학용품비</td> <td>초등학생</td> <td>72,000원</td> </tr> <tr> <td>중·고등학생</td> <td>83,000원</td> </tr> </tbody> </table>		구 분	대 상	금 액	부교재비	초등학생	134,000원	중학생	212,000원	고등학생	339,200원	학용품비	초등학생	72,000원	중·고등학생	83,000원
	구 분	대 상	금 액																													
부교재비	초등학생	66,000원																														
	중·고등학생	105,000원																														
학용품비	초등학생	50,000원																														
	중·고등학생	57,000원																														
구 분	대 상	금 액																														
부교재비	초등학생	134,000원																														
	중학생	212,000원																														
	고등학생	339,200원																														
학용품비	초등학생	72,000원																														
	중·고등학생	83,000원																														
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람·발급 제한신청에 필요한 증거 서류(택일,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13조의2)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 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증거서류의 경우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0조 제1항에 따른 고소·고발사건처분 결과통지서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2조 제3항에 따른 사건처분결과증명서 - 「가정보호심판규칙」 제3조에 따른 임시보호명령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이나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폭력피해자는 열람·발급을 제한 신청 후 같은 방법으로 해제신청도 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람·발급 제한신청에 필요한 증거 서류(택일,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13조의2)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 또는 긴급전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상담 사실 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증거서류의 경우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또는 긴급전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긴급피난처 입소 확인서 -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2항에 따라 설치된 지역노인보호전문 기관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9에 따라 설치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장이 발급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입소 확인서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통지서 																													
피해자 지원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람·발급 제한신청에 필요한 증거 서류(택일,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13조의2)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 또는 긴급전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상담 사실 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증거서류의 경우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또는 긴급전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긴급피난처 입소 확인서 -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2항에 따라 설치된 지역노인보호전문 기관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9에 따라 설치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장이 발급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입소 확인서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통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람·발급 제한신청에 필요한 증거 서류(택일,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13조의2)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 또는 긴급전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상담 사실 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증거서류의 경우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또는 긴급전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긴급피난처 입소 확인서 -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2항에 따라 설치된 지역노인보호전문 기관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9에 따라 설치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장이 발급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입소 확인서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통지서 																													

구 분		2019년도	2020년도
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피해자 지원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0조 제1항에 따른 고소·고발사건처분 결과통지서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2조 제4항에 따른 사건처분결과증명서 - 「가정보호심판규칙」 제3조에 따른 임시보호명령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이나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p>※ 가정폭력피해자는 열람·발급을 제한 신청 후 같은 방법으로 해제신청도 할 수 있음</p>
	기타 행정 사항	<신 설>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이 지침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당해연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를 준용할 수 있음
자립 지원금	신청 방법	<신 설>	○ 미퇴소자의 경우 사전준비 등을 위해 퇴소시점 2개월 전부터 지원가능
주거 지원 사업	운영 기관 선정 대상	<신 설>	○ 임대주택 공급물량이 있는 시도 또는 시군구에 소재하고 있으며,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주거 지원 신청 대상	<p>4. 주거지원 신청 대상, 절차 및 방법 라. 입주자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 우선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순위)보호시설에 3개월 이상 입소한 피해자,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보호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함), 보호 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 폭력 피해아동·청소년 (2순위) 보호시설에 3개월 미만 입소한 피해자 (3순위) 보호시설 미 입소 피해자 ※ 입주 우선 순위 결정에 있어 보호시설 입소 기준은, 현재 입소해 있는지, 이미 퇴소했는지를 구분하지 않음 	<p>4. 주거지원 신청 대상, 절차 및 방법 라. 입주자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 우선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시설장, 가정폭력상담소장 또는 1366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 •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 • 기타 지자체 공무원,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지원시설 우선 입소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구 분		2019년도	2020년도
주거 지원 사업	선정 방법	<p><신 설></p>	<p>라-1. 선정방법 (시·도가 운영기관 선정 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기관 선정의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 선정심사 기준은 설치·운영기관의 재정능력, 사업 전문성, 조직·인력구성 적절성, 시설 설치 환경(접근성 등), 사업수행계획 적정성, 연계서비스 지원 계획, 기존 보호시설 운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원활한 입소자 지원을 위해 운영기관별 그룹홈(10호) 임대 시 가급적 보호시설에서 가까운 건물에 함께 임대 ○ 선정심사 우선 순위 (1순위) 주거지원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시·군·구 (2순위) 주거지원시설이 기 설치된 시·군·구 ※ 1순위 미달 시 2순위 심사·선정
		<p>라. 선정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기관 선정의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 운영기관 신청 시·도가 4개소 이내일 경우 심사 생략 ○ 선정심사 기준은 설치·운영기관의 재정능력, 사업 전문성, 조직·인력 구성 적절성, 시설 설치 환경(접근성 등), 사업수행계획 적정성, 연계 서비스 지원계획, 기존 보호시설 운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원활한 입소자 지원을 위해 운영기관별 그룹홈(10호) 임대 시 가급적 보호시설에서 가까운 건물에 함께 임대 ○ 선정심사 우선 순위 (1순위) 주거지원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시·도 (2순위) 주거지원시설이 기 설치된 시·도 ※ 1순위 미달 시 2순위 심사·선정 	<p>라-2. 선정방법(여성가족부가 시·도 선정 운영기관 승인 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기관 선정의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 운영기관 신청 시·도가 선정기관 수 이내 일 경우 심사 생략 ○ 선정심사 기준은 설치·운영기관의 재정능력, 사업 전문성, 조직·인력구성 적절성, 시설 설치 환경(접근성 등), 사업수행계획 적정성, 연계서비스 지원계획, 기존 보호시설 운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원활한 입소자 지원을 위해 운영기관별 그룹 홈(10호) 임대 시 가급적 보호시설에서 가까운 건물에 함께 임대 ○ 선정심사 우선 순위 (1순위) 주거지원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시·도 (2순위) 주거지원시설이 기 설치된 시·도 ※ 1순위 미달 시 2순위 심사·선정

구 분		2019년도			2020년도				
주거 지원 사업	국고 보조금 지원·관리	〈운영기관별 보조금 지원내역〉			〈운영기관별 보조금 지원내역〉				
		구분	지원 금액	지원 내역	구분	지원 금액	지원 내역		
		임대 보증금	신규	71백만원 내외 (국비 100%)	호당 7,154천원 (10호 기준)	임대 보증금	신규	71백만원 내외 (국비 100%)	호당 7,154천원
			재계약	3.3백만원 내외 (국비 100%)	호당 331천원 (10호 기준)		재계약	3.3백만원 내외 (국비 100%)	호당 331천원
		입주 준비금	22백만원 (국비 100%)	호당 2,205천원 (10호 기준)	입주 준비금	22백만원 (국비 100%)	호당 2,205천원		
사업 운영비	35.4백만원 (국비 서울 50%, 지방 70%)	월 2,955천원	사업 운영비	36.6백만원 (국비 서울 50%, 지방 70%)	월 3,052천원				
의료비	구상권의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구청장은 가정폭력행위자 명단을 관리하고 구상권(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을 행사하되 다음의 경우 구상권 행사 불가 〈가정폭력방지법 제18조제4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가 보호시설 입소 중에 치료 보호를 받은 경우 - 행위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규정의 수급자인 경우 - 행위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등록된 경우 - 연간 피해자 1인 의료비 지원총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구청장은 가정폭력행위자 명단을 관리하고 구상권(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을 행사하되 다음의 경우 구상권 행사 불가 〈가정폭력방지법 제18조제4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가 보호시설 입소 중에 치료 보호를 받은 경우 - 행위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규정의 수급자인 경우 - 행위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등록된 경우 - 연간 피해자 1인 의료비 지원총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시설 종사자 교육	종사자 교육	X. 여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교육 (이하 내용 생략)			〈삭 제〉 ☞ 예산 이관으로 2020년부터 교육비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부담, 여비는 소속기관에서 부담				
가정 폭력 가해자 교정 치료 프로그램	전문 강사 자격 기준	○ 대면상담경력 1년 이상인 자로서 <u>여성가족부 시행 가정폭력 행위자 운영자과정 교육이수자</u>			○ 대면상담경력 1년 이상인 자로서 <u>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100시간) 이수자</u>				
	강사 기준	○ 강사진 구성 시 외부전문강사를 최소 40% 이상 구성하도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 자치단체장이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이 경우에도 외부 전문강사가 최소 30% 이상은 되도록 하여야 함)			○ 강사진 구성 시 <u>외부전문강사의 다양화를 위해</u> 외부전문강사를 최소 40% 이상 구성하도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 자치단체장이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이 경우에도 외부 전문강사가 최소 30% 이상은 되도록 하여야 함)				

5 여성긴급전화 「1366」

구 분	2019년도	2020년도
운영 목표	<p>2. 운영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상담 및 긴급보호를 위한 초기 지원체계 구축 ○ 여성폭력에 대한 신고접수 및 상담을 통해 관련 시설(상담소, 보호시설)·기관(112, 119)연계 등 네트워크 중심기관 육성 	<p>2. 운영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상담, 긴급보호 등을 위한 초기 지원체계 구축 및 피해자 지원시설, 경찰 등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피해자 지원 강화 ○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운영위원회 활성화 등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의 허브 역할 수행
여성 긴급 전화 1366 운영 주체 및 시설 설치 기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p>나) 위원회의 위원은 아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 <u>시장·군수·구청장</u>이 임명 또는 위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의 장 • <신 설> • 시설 이용자 대표 • 시설 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 시설 종사자의 대표 • 해당 시·군·구 소속의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참조) <p>나) 위원회의 위원은 아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의 장 • 가정폭력상담소 또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장 • 시설 이용자 대표 • 시설 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 시설 종사자의 대표 • 해당 시·도(또는 시·군·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p>라) 시설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관련법 제36조제1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p>라) 시설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관련법 제36조제1항 참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구 분		2019년도	2020년도
여성 긴급 전화 1366	운영 주체 및 시설 설치 기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시설이용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 <신 설> •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시설이용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 <u>지역사회 가정폭력 피해자 특성에 따른 연계 및 지원에 관한 사항</u> •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p>마) 기타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위원회 운영일지를 작성·보관 ※ 위원회 간사는 회의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정본은 위원회에 보관하고, 사본 1부는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p><신 설></p>	<p>마) 기타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위원회 운영일지를 작성·보관 ※ 위원회 간사는 회의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정본은 위원회에 보관하고, 사본 1부는 <u>관할 시·도지사(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u> ※ <u>관할 시·도지사는 운영위원회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반기별 제출 (상반기 7월말까지, 하반기 1월말까지)</u>
	종사자 입면 및 근무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장 및 상담원 • 운영주체 관계자가 센터장을 겸직할 경우에는 대표자를 제외한 전담 직원을 인력 기준에 의해 배치 ※ 단, 센터장을 겸직하는 운영주체 관계자는 <u>다른 직을 겸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장 및 상담원 • 운영주체 관계자가 센터장을 겸직할 경우에는 <u>센터장을 제외한 전담 직원을 인력 기준에 의해 배치</u> ※ 단, 센터장을 겸직하는 운영주체 관계자는 <u>운영주체 이외의 기관에서 다른 직을 겸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u>

6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사업

구 분		2019년도	2020년도																																																					
쉼터	사업내용	<신 설>	○ 사업내용 - 시설 퇴소 후 모니터링과 사후 관리																																																					
	종사자 자격기준	<신 설>	○ 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은 외국인 가정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단체 또는 보호 시설을 의미																																																					
	지원금액	○ 지원 금액(지방비 포함) (단위: 천원) <table border="1" style="margin-top: 5px;"> <thead> <tr> <th rowspan="2">정 원</th> <th colspan="2">종사자(명)</th> <th colspan="4">지원 금액</th> </tr> <tr> <th>시설장</th> <th>상담원</th> <th>계</th> <th>인건비·운영비</th> <th>긴급 지원비</th> <th>치료·회복 프로그램</th> </tr> </thead> <tbody> <tr> <td>11인 이상 30인 이하</td> <td>1</td> <td>4</td> <td>170,732</td> <td>130,732</td> <td>24,000</td> <td>16,000</td> </tr> <tr> <td>5인 이상 10인 이하</td> <td>1</td> <td>3</td> <td>137,213</td> <td>105,213</td> <td>18,000</td> <td>14,000</td> </tr> </tbody> </table> ※ 운영비는 인건비·운영비 합계의 8~20%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책정 가능	정 원	종사자(명)		지원 금액				시설장	상담원	계	인건비·운영비	긴급 지원비	치료·회복 프로그램	11인 이상 30인 이하	1	4	170,732	130,732	24,000	16,000	5인 이상 10인 이하	1	3	137,213	105,213	18,000	14,000	○ 지원 금액(지방비 포함) (단위: 천원) <table border="1" style="margin-top: 5px;"> <thead> <tr> <th rowspan="2">정 원</th> <th colspan="2">종사자(명)</th> <th colspan="4">지원 금액</th> </tr> <tr> <th>시설장</th> <th>상담원</th> <th>계</th> <th>인건비·운영비</th> <th>긴급 지원비</th> <th>치료·회복 프로그램</th> </tr> </thead> <tbody> <tr> <td>11인 이상 30인 이하</td> <td>1</td> <td>4</td> <td>189,219</td> <td>138,304</td> <td>10,911</td> <td>24,000</td> </tr> <tr> <td>5인 이상 10인 이하</td> <td>1</td> <td>3</td> <td>154,489</td> <td>112,130</td> <td>10,359</td> <td>18,000</td> </tr> </tbody> </table> ※ 운영비는 인건비·운영비 합계의 8~20%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책정 가	정 원	종사자(명)		지원 금액				시설장	상담원	계	인건비·운영비	긴급 지원비	치료·회복 프로그램	11인 이상 30인 이하	1	4	189,219	138,304	10,911	24,000	5인 이상 10인 이하	1	3	154,489	112,130	10,359
정 원	종사자(명)			지원 금액																																																				
	시설장	상담원	계	인건비·운영비	긴급 지원비	치료·회복 프로그램																																																		
11인 이상 30인 이하	1	4	170,732	130,732	24,000	16,000																																																		
5인 이상 10인 이하	1	3	137,213	105,213	18,000	14,000																																																		
정 원	종사자(명)		지원 금액																																																					
	시설장	상담원	계	인건비·운영비	긴급 지원비	치료·회복 프로그램																																																		
11인 이상 30인 이하	1	4	189,219	138,304	10,911	24,000																																																		
5인 이상 10인 이하	1	3	154,489	112,130	10,359	18,000																																																		
자활 지원 센터	주요기능	<신 설>	○ 시설 퇴소 후 모니터링과 사후 관리																																																					
	종사자 자격기준	<신 설>	○ 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은 외국인 가정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단체 또는 보호 시설을 의미																																																					
	지원금액	○ <u>881,324천원</u> (국비·지방비 포함) - 인건비: 241,041천원 - 운영비: 155,283천원 - 사업비: 485,000천원	○ <u>919,344천원</u> (국비·지방비 포함) - 인건비: 279,061천원 - 운영비: 155,283천원 - 사업비: 485,000천원																																																					
그룹홈	주요기능	<신 설>	○ 시설 퇴소 후 모니터링과 사후 관리																																																					
	지원금액	○ <u>81,162천원</u> (국비·지방비 포함) - 인건비: 62,622천원 - 운영비: 18,540천원	○ <u>97,503천원</u> (국비·지방비 포함) - 인건비: 62,622천원 - 운영비: 78,963천원																																																					

PART 01
 PART 02
 PART 03
 PART 04
 PART 05
 PART 06
 PART 07
 PART 08
 PART 09
 PART 10

구 분		2019년도				2020년도																															
상담소	설치·운영기준	〈신 설〉				※ 1개소당 상담소 종사자 최대 8명 (소장1명, 종사자7명)																															
	종사자 자격기준	〈신 설〉				○ 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은 외국인 가정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단체 또는 보호시설을 의미																															
	2020 년도 예산지원 기준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인건비</th> <th>사업비</th> <th>운영비</th> </tr> </thead> <tbody> <tr> <td>계</td> <td>268,552</td> <td>163,152</td> <td>75,400</td> <td>30,000</td> </tr> <tr> <td>내역</td> <td>-</td> <td>2,266천원 × 9개월 ×8명</td> <td>통·번역비, 의료비, 홍보, 실태조사 등</td> <td>수용비, 공공 요금, 임차료 등</td> </tr> </tbody> </table>				구분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계	268,552	163,152	75,400	30,000	내역	-	2,266천원 × 9개월 ×8명	통·번역비, 의료비, 홍보, 실태조사 등	수용비, 공공 요금, 임차료 등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인건비</th> <th>사업비</th> <th>운영비</th> </tr> </thead> <tbody> <tr> <td>계</td> <td>281,376</td> <td>216,488</td> <td>34,888</td> <td>30,000</td> </tr> <tr> <td>내역</td> <td>-</td> <td></td> <td>통·번역비, 의료비, 홍보</td> <td>수용비, 공공 요금, 임차료 등</td> </tr> </tbody> </table>				구분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계	281,376	216,488	34,888	30,000	내역	-		통·번역비, 의료비, 홍보	수용비, 공공 요금, 임차료 등
		구분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계	268,552	163,152	75,400	30,000																																	
내역	-	2,266천원 × 9개월 ×8명	통·번역비, 의료비, 홍보, 실태조사 등	수용비, 공공 요금, 임차료 등																																	
구분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계	281,376	216,488	34,888	30,000																																	
내역	-		통·번역비, 의료비, 홍보	수용비, 공공 요금, 임차료 등																																	
	* 인건비의 경우 단가(2,266천원)와 개월수 (선정 및 개소 시기)를 고려하여 산정 (상기 인건비는 4월에 선정·개소된 상담소를 예시한 금액임)				〈삭제〉																																

7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구 분	2019년도	2020년도																										
월 평균 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 안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안정지원금 월 <u>1,404천원</u> - 간병비 월 평균 <u>1,360천원</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 안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안정지원금 월 <u>1,474천원</u> - 간병비 월 평균 <u>1,519천원</u> 																										
간병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단가) 종일 또는 시간제 이용으로 구분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colspan="2">1일 지원 한도</th> </tr> <tr> <th>종일제</th> <th>반일제(12시간)</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병원</td> <td>일반 단가</td> <td>59,000원 (주·야간 12시간 기준)</td> </tr> <tr> <td>특수 단가</td> <td>70,000원 (주·야간 12시간 기준)</td> </tr> <tr> <td>가정</td> <td>일반 단가</td> <td>65,000원 (주·야간 12시간 기준) * 가정간병의 경우 1시간 단위로 지원 가능하며, 시간당 단가는 8,400원으로 함(8시간 이상 이용 시 반일제 적용)</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일 간병이 필요한 경우, 의도적인 주·야간 교대는 지양 ※ 간병비 단가를 초과하여 신청된 금액은 자부담으로 함 ※ 간병인은 간병에 관한 소정의 교육을 받은 자를 원칙으로 하며(필요 시 증빙) 다만 간병인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간병이 가능한 자도 예외적으로 인정가능하나 사전 협의 요망 	구 분	1일 지원 한도		종일제	반일제(12시간)	병원	일반 단가	59,000원 (주·야간 12시간 기준)	특수 단가	70,000원 (주·야간 12시간 기준)	가정	일반 단가	65,000원 (주·야간 12시간 기준) * 가정간병의 경우 1시간 단위로 지원 가능하며, 시간당 단가는 8,400원으로 함(8시간 이상 이용 시 반일제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단가) 종일 또는 시간제 이용으로 구분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colspan="2">1일 지원 한도</th> </tr> <tr> <th>종일제</th> <th>반일제(12시간)</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병원</td> <td>일반 단가</td> <td>59,000원 (주·야간 12시간 기준)</td> </tr> <tr> <td>특수 단가</td> <td>70,000원 (주·야간 12시간 기준)</td> </tr> <tr> <td>가정</td> <td>일반 단가</td> <td>65,000원 (주·야간 12시간 기준) * 가정간병의 경우 1시간 단위로 지원 가능하며, 시간당 단가는 8,590원으로 함(8시간 이상 이용 시 반일제 적용)</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일 간병이 필요한 경우, 의도적인 주·야간 교대는 지양 ※ 간병비 단가를 초과하여 신청된 금액은 자부담으로 함 ※ 간병인은 간병에 관한 소정의 교육을 받은 자를 원칙으로 하며(필요 시 증빙) 다만 간병인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간병이 가능한 자도 예외적으로 인정가능하나 사전 협의 요망 	구 분	1일 지원 한도		종일제	반일제(12시간)	병원	일반 단가	59,000원 (주·야간 12시간 기준)	특수 단가	70,000원 (주·야간 12시간 기준)	가정	일반 단가	65,000원 (주·야간 12시간 기준) * 가정간병의 경우 1시간 단위로 지원 가능하며, 시간당 단가는 8,590원으로 함(8시간 이상 이용 시 반일제 적용)
구 분	1일 지원 한도																											
	종일제	반일제(12시간)																										
병원	일반 단가	59,000원 (주·야간 12시간 기준)																										
	특수 단가	70,000원 (주·야간 12시간 기준)																										
가정	일반 단가	65,000원 (주·야간 12시간 기준) * 가정간병의 경우 1시간 단위로 지원 가능하며, 시간당 단가는 8,400원으로 함(8시간 이상 이용 시 반일제 적용)																										
구 분	1일 지원 한도																											
	종일제	반일제(12시간)																										
병원	일반 단가	59,000원 (주·야간 12시간 기준)																										
	특수 단가	70,000원 (주·야간 12시간 기준)																										
가정	일반 단가	65,000원 (주·야간 12시간 기준) * 가정간병의 경우 1시간 단위로 지원 가능하며, 시간당 단가는 8,590원으로 함(8시간 이상 이용 시 반일제 적용)																										
의료비·비급여 의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당 지원한도) 연 <u>983만원</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당 지원한도) 연 <u>1,032만원</u> 																										

8 학교 및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운영

구 분	2019년도	2020년도
강사기준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별표 신설>	※ 장애 아동·청소년 성교육/성폭력 예방교육과 비장애 아동·청소년 성교육/성폭력 예방교육의 경력은 통합 하여 비장애 아동·청소년 성교육 /성폭력 강의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9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구 분	2019년도	2020년도
교육 대상	<신 설>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실시 교육 등과 연계를 통한 결혼이주여성, 다문화 가족 등 대상 교육 권역별 1회 이상 실시 필수
강사풀 구성 및 운영	○ 강사 워크숍 개최 - 지역 교육지원기관장은 사업 착수 1~2개월 이내 강사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 강사 워크숍 개최 - 지역 교육지원기관은 연 2회 이상 강사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예산의 지원 및 관리	<신 설>	○ 도서벽지 등 선박 이동이 불가피할 경우 교통비 실비 지출 가능 * 증빙자료로 배표 등 인증 필수
사업평가	○ 평가 체계 - 지도점검(시·도, 5~6월) - 현장점검(여가부 등, 6~8월) - 사업평가(여가부 등, 11월) ○ 사업평가 배점 반영비율 - 현장점검(30%), 보고서(70%)	○ 평가 체계 - 지도점검(시·도, 6월) - 중간 발표회(여가부 등, 7~8월) - 사업평가(여가부 등, 11월) ○ 사업평가 배점 반영비율 - 중간 발표회(20%), 보고서(80%)

V. 2020년 여성·아동권익증진 예산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19년	2020년	비고
합 계	109,957	117,201	
□ 일반예산	17,543	25,369	
○ 아동·여성안전교육문화사업	2,781	2,377	
-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운영	1,225	1,025	
- 일반국민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872	796	
- 성 인권교육 및 성인권 교과개발	556	556	
- 성폭력 추방주간 및 예방 홍보	128	-	
○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청소년 성보호활동 지원	7,441	7,378	
- 신상정보 인터넷공개제도	234	240	
- 신상정보 우편고지	6,123	6,004	
-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자 교육	192	192	
- 성범죄자 재범방지교육	524	524	
- 성범죄 예방 및 홍보	368	418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3,940	4,745	
- 생활안정지원	972	797	
- 피해자 지원사업	649	555	
- 피해자 기념사업	2,180	3,248	
- 기타 경상경비	139	145	
○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지원	1,662	-	
○ 여성폭력 실태조사	1,372	-	
○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	-	592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운영지원	-	9,892	
○ 권익증진기본경비(총액)	85	125	
○ 권익증진기본경비	262	260	

사 업 명	2019년	2020년	비고
□ 양성평등기금	55,375	54,882	
○ 폭력피해이주여성 지원사업	5,180	6,200	
-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	3,978	4,370	
- 상담소 운영지원	684	1266	
- 이주여성 보호시설 기능보강	71	117	
- 시설 종사자 교육	35	35	
- 이주여성 인권보호 및 폭력피해 예방홍보	76	76	
- 북한이탈여성 폭력피해 예방 및 지원	336	336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	15,904	15,245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11,614	11,838	
-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1,543	1,543	
-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	861	873	
- 지원시설 기능보강	428	991	
- 성매매방지 중앙지원센터 운영	1,458	-	
○ 가정폭력·성폭력 재발방지사업	1,477	1,329	
- 가정·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879	791	
- 가정폭력 예방 홍보	100	90	
- 성폭력 가해청소년 교육	498	448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31,924	31,508	
-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운영지원	5,052	5,665	
- 여성긴급전화 중앙지원단 설치·운영	2,802	-	
-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8,411	9,427	
- 가정폭력보호시설 운영지원	9,405	10,398	
-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운영지원	976	984	
-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1,904	1,853	

사 업 명	2019년	2020년	비고
- 여성폭력관계자 교육지원	151	-	
- 가정폭력 관련 종사자 치유	40	40	
-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	2,941	2,941	
- 공기청정기 보급	241	-	추경
- 시설종사자 실태조사 분석 용역	-	200	
○ 성희롱 등 직장내 여성폭력 방지지원	1,131	600	
□ 청소년육성기금	5,453	5,568	
○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교육 및 피해자 치료재활	5,453	5,568	
- 청소년 성문화센터 설치·운영	4,417	4,532	
-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재활 사업	1,036	1,036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31,345	31,382	
○ 성폭력 피해자 지원	31,345	31,382	
-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	6,038	6,689	
- 성폭력보호시설 운영지원	4,452	4,919	
- 해바라기센터 운영지원	13,959	14,583	
-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등 서비스 지원	4,002	4,042	
- 해바라기센터 신규설치	-	346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신규설치	308	149	
- 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	310	474	
- 여성·아동폭력피해 중앙지원단 운영	1,452	-	
- 성폭력 응급키트	164	172	
- 사회복지무요원 인건비	16	8	
- 성폭력 실태조사	644	-	

10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지침

- I.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사업개요
- II.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운영
- III. 세부 사업 운영
- IV. 예산의 지원 및 관리
- V. 지도·점검 및 평가

I.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취약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여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폭력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개선을 도모

2 법적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기관 내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 사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민에게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에 관한 업무를 제5조의2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이 아닌 국민에게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에 관한 업무를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3 추진경과

- '13년 체계적인 예방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지원 전담기관을 설치·운영
- '14년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법적근거 신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15.12.1. 개정)
- '15년 지역 교육지원기관의 전국 확대 및 지자체 보조 사업으로 전환
 - '13년 권역별 10개 기관 → 17개 시·도별 18개 기관
- '16년 도서벽지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시범운영 실시
- '18년 문화예술인 등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신규 교육 대상 발굴 실시
- '19년 체육인, 이주민 등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신규 교육 대상 발굴 실시
 - ※ ('13년) 1,204회 → ('14년) 2,604회 → ('15년) 3,851회 → ('16년) 3,903회 → ('17년) 5,458회 → ('18년) 5,363회 → ('19년) 5,489회

4 사업규모 및 지원예산

- 사업기간 : 2013년도~
- 사업규모 :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 총 19개 기관('19.12월 기준)
 - 중앙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1개), 지역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18개)
 - * 이하 “중앙 교육지원기관”, ** 이하 “지역 교육지원기관”
- 사업 예산 : 총 2,197,000천원
 - 찾아가는 성폭력예방교육 운영 사업 : 1,440,000천원(국비 50%, 지방비 50%)
 - ※ 17개 시·도(18개 기관) 지역 교육지원기관 인건비, 강사비, 기본운영비
 - 찾아가는 가정폭력예방교육 운영 사업 : 152,000천원(국비 50%, 지방비 50%)
 - 중앙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운영 사업 : 605,000천원(국비 100%)

○ 유형별 예산지원

- 유형별 시·도 구분(일반형 4개)

구분	유형	해당 시·도
일반 (성폭력/ 가정폭력)	가(2)	서울특별시, 경기도(남부)
	나(6)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충청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다(8)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북부),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라(2)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 경기도는 관할 범위 등을 고려하여 2개 권역으로 구분(가급 1, 다급 1)

- 등급별 예산 지원액

(단위: 개소, 천원, 회)

구분	유형	교육목표 횟수	국비 (A)	지방비 (B)	총 지원액 (A+B)
성폭력 예방교육 (자치단체 경상보조)	가(2)	400	61,700	61,700	123,400
	나(6)	300	44,150	44,150	88,300
	다(8)	215	35,225	35,225	70,450
	라(2)	100	24,830	24,830	49,660
가정폭력 예방교육 (자치단체 경상보조)	가(2)	50	6,500	6,500	13,000
	나(6)	35	4,375	4,375	8,750
	다(8)	30	3,750	3,750	7,500
	라(2)	25	3,375	3,375	6,7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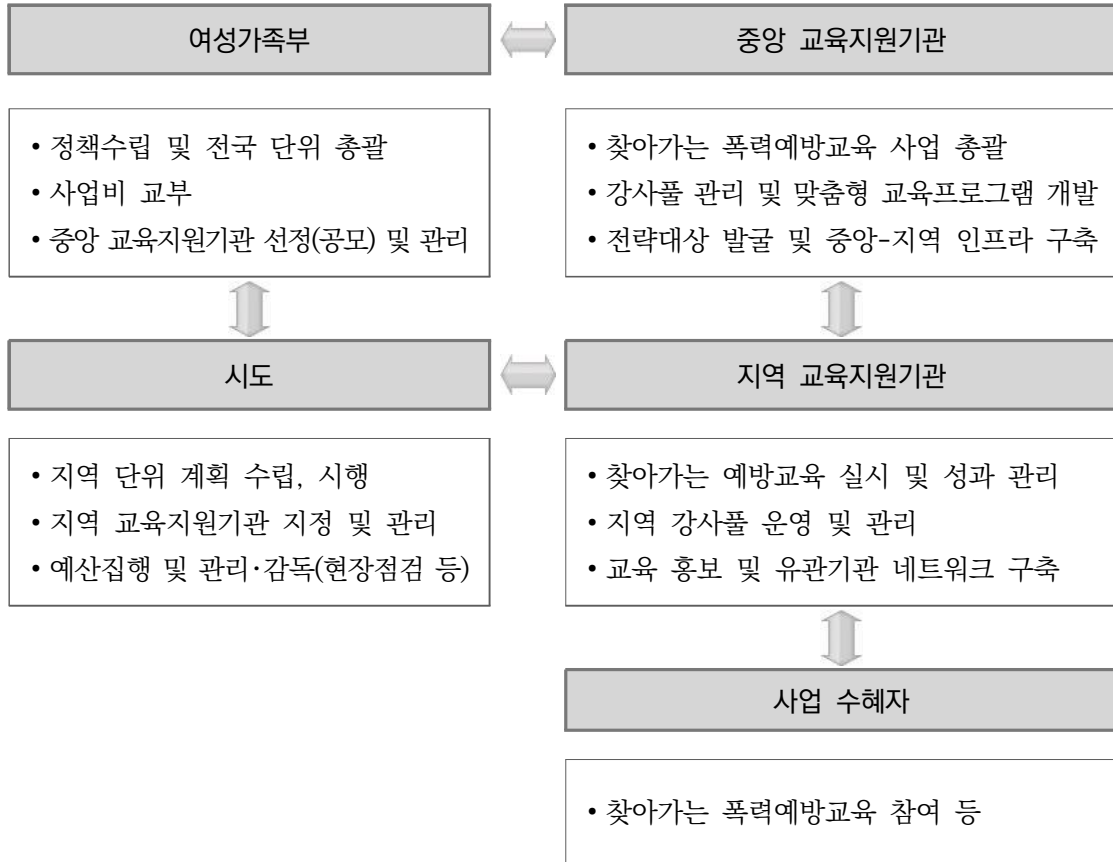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 여성가족부 → 지자체 → 지역 교육지원기관

5 성과목표

성과지표	내용	'20년 목표치
교육실적	교육 횟수	(성 폭 력) 4,550회 이상 (가정폭력) 600회 이상
만족도조사	사업 수혜자 만족도 측정	(교육만족도) 87.4점 이상

6 사업추진체계

가. 사업추진체계도



나. 사업 주체별 역할

○ 여성가족부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기본계획 수립
-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관련 법규 제정 및 정비
-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관리 감독 및 지도
- 사업비 교부 및 정산, 사업 평가
- 중앙 교육지원기관 위탁 선정 및 관리

○ 지방자치단체(시·도)

- 지역 단위 자체 지원 계획 수립
 - ※ 여성가족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지역 사업과 협력체계 구축·연계 방안 등 수립
- 지역 교육지원기관 공모 및 선정

-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와의 협력 강화(우선 교육지역 지정 등)
- 예산 집행 및 지역 교육지원기관 사업 관리·감독(사업점검, 결과보고 등)

○ 중앙 교육지원기관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성과관리 및 교육연계
- 유형별·대상별 맞춤형 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
- 분야별·직군별 강사풀 관리 및 역량강화 지원(워크숍, 매뉴얼 개발 등)
- 전략대상 발굴을 통한 특화교육 운영
- 사업성과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만족도 조사 등)
- 사업 관계자(시·도, 지역지원기관 등)간 정보 교류 및 협력

○ 지역 교육지원기관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및 성과 관리
- 유형별·대상별 교육 목표에 따른 맞춤형 폭력예방교육 실시
- 지역별 강사풀 구축 및 관리(워크숍, 학습동아리 등 역량강화 지원)
- 교육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실시 등 사업 성과관리
- 권역별 폭력예방교육 지역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II.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운영

1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지정

가. 지정절차

- '중앙 교육지원기관'의 사업수행기관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2에 따라 위탁자 선정
- 시·도에서는 '지역 교육지원기관' 사업수행기관 선정 시 ① 공개모집 또는 ② 여성폭력예방교육 운영 등에 대한 역량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라고 인정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체 심의위원회 개최하여 지정할 수 있음
 - 지정 기간은 사업의 연속성 등 고려하여 2년 이내에서 정할 수 있음
 - 최종 선정된 '지역 교육지원기관'의 사업수행기관은 '찾아가는 가정폭력예방교육'의 사업수행기관으로 지정됨
 - ※ '찾아가는 성폭력예방교육'과 '찾아가는 가정폭력예방교육' 사업은 동일한 사업임
 - ※ 사업 운영 및 보조금 사용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 시·도의 조례 및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름

나. 지정대상

- 성폭력, 가정폭력 등 폭력예방교육 운영 등에 대한 역량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등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이나 단체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기관(단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거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민법 제32조에 의해 허가받거나 여성·아동 권익 법령에 의거 설립된 법인
 -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해 설립·운영 중인 단체 및 기관
 - ※ 컨소시엄 구성(공동 수급) 사업 수행 가능
 - ※ 부정수급, 정부의 유사사업 수행 시 지침 위반 등의 사유로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는 기관은 신청 불가

다. 심사방법 및 기준

- 시·도에서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되, 서류 심사, 실사 및 프레젠테이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
 - ※ 기존 협의체 활용 가능
- 사업 수행 능력, 사업계획의 적절성, 사업 수행 방법 및 내용의 합리성, 지역연계성 등을 종합 평가
 - 여성폭력예방교육 관련 사업수행경력
 - 여성폭력예방교육 관련 전문인력 확보 수준
 - 운영계획서의 충실성, 지역연계성 등 실행가능성 종합평가
 - ※ 평가 점수 60점 미만인 기관은 지원 선정에서 제외

라. 지정취소 기준

-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을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함
 - 필요시 지정 심사위원회의 심의(기관 의견 청취 포함)를 거쳐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지정 취소 기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인력 및 시설기준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유용하여 사업비가 환수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 및 위탁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등 기타의 사유로 계속하여 지정·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2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운영

가. 명칭 및 현판 설치, 대표번호 사용

- 명칭은 “여성가족부 지정 또는 지원 ○○(중앙 및 시·도)폭력예방교육 지원 기관”으로 함
 - 여성가족부 지정 중앙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 여성가족부 지원 ○○(시·도)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 각 기관에서는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전국 대표번호(1661-6005)를 사용해야 하며, 현판, 현수막, 책자 등 홍보물 제작 시에는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명칭을 반드시 포함하여 사용하여야 함
- 중앙 및 지역 교육지원기관은 이용자에게 신뢰감을 주고, 사업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위해 현판 설치(운영비로 제작 가능)
 - ※ 현판 설치 시 중앙 교육지원기관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따르도록 함

나. 운영인력 관리

- 기관장(총괄책임자) 1인 및 교육관리 담당자* 1인이 필수 참여하여야 하며, 이 중 1인은 아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사업수행기관 대표자 및 사업 담당자 자격기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여성학, 사회학, 상담심리학, 아동학, 법학 등 관련분야 전공 또는 관련 자격증·수료증(사회복지사, 성폭력전문상담원, 가정폭력전문상담원, 상담사 등) 소지자로서, 1년 이상 관련 기관에서 근무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사업 담당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다른 업무와 겸임할 수 없음. 다만,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기관장과 그 밖의 인력은 겸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관장은 직원 간 업무가 균형 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기관장, 사업 담당자 등 내부 직원에 의한 강의는 ‘시도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사업량의 15% 이내에서 가능함. 단, 사업 담당자는 업무시간(9~18시) 중에는 내부 강사로 활동할 수 없으며, 기관장 등은 사업 관리 및 자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부 강사로 활동 가능함

다. 사업 관리

-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작성·제출
 - 각 지역 교육지원기관장은 전년도 사업 실적 및 당해연도 계획서를 작성하여 중앙 교육지원기관장 및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20.1.10일까지)
 - ※ '지역 교육지원기관에서는 사업계획 수립 시, 중앙 교육지원기관의 컨설팅을 적극 활용
 - 중앙 교육지원기관장은 각 지역 교육지원기관의 자료를 종합 평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매년 1월말까지 제출
- 기관장은 교육지원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2년간 비치해야 함. 단, 여성가족부 지원 사업비 예산 집행(재무·회계장부 등)과 관련한 사항은 5년간 보존

관리·사업에 관한 장부	재무·회계에 관한 장부
① 종사자 관리 대장(채용 및 자격 관련 서류 등) ② 문서철(보고서 및 관계행정기관과의 문서철) ③ 문서접수·발송대장 ④ 사업운영 관련 문서(교육실시대장, 강의안 등) ⑤ 사업 착수·중간·결과보고서	① 총계정원장 및 사업별 수입·지출부 ② 금전출납부 및 그 증빙서류 ③ 예산서 및 결산서 ④ 비품수불대장, 비품관리대장(필요시) ⑤ 각종 증빙서류 및 그밖에 필요한 서류

라. 변경사항 등의 보고

- 기관장은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제출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도지사 및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후 승인 받아야 함
 - 지역 기관장은 중앙기관장 및 시·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지역 교육지원기관의 변경된 자료를 검토·승인 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중앙 기관장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변경사항을 제출 후 승인받아야 함
- 기관장은 인력 및 시설, 소재지 등에 변동사항 발생 시 시·도지사 및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인력 변경 시에는 새로 채용하는 인력 관련 경력사항 등을 공문으로 제출

Ⅲ. 세부 사업 운영

1 기본방향

- 성평등 관점의 이해 및 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과 ‘성평등 교육’을 연계하여 실시
- 지역사회 내 교수, 전문가 등 다양한 직군의 강사풀 확충 및 역량강화 지원
 - 강사 워크숍, 교육 모니터링 확대 등으로 강사 질 관리 강화
 - ※ ('20년 목표) 총 5,150회(폭력예방교육 4,550회, 가정폭력예방교육 600회)

< 2020년 시·도별 폭력예방교육 사업목표 >*

구 분			성폭력 예방교육 소 계(A)	가정폭력 예방교육 소 계(B)	목표횟수 총 계(A+B)
1	서울시	(가)	400	50	450
2	부산시	(나)	300	35	335
3	대구시	(나)	300	35	335
4	인천시	(나)	300	35	335
5	광주시	(다)	215	30	245
6	대전시	(다)	215	30	245
7	울산시	(다)	215	30	245
8	세종시	(라)	115	25	140
9	경기남부	(가)	400	50	450
10	경기북부	(다)	215	30	245
11	강원도	(다)	215	30	245
12	충청북도	(나)	300	35	335
13	충청남도	(다)	215	30	245
14	전라북도	(다)	215	30	245
15	전라남도	(나)	300	35	335
16	경상북도	(나)	300	35	335
17	경상남도	(다)	215	30	245
18	제주도	(라)	115	25	140
총 계			4,550회	600회	5,150회

* 세부내용은 추후 조정될 수 있음

2 교육대상

가. 교육대상 선정

- 폭력예방교육 비의무 대상 일반국민(교육 사각지대 우선 발굴 필요) 등
- 예방교육 의무대상 기관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전략집단의 경우 지원 가능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대상 기관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대상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각급 학교,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기관·단체에 소속된 사람(학생, 보육아동 및 원생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각급 학교,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에 소속된 사람(학생 포함)

나. 전략집단 대상

- 지역 구성원, 취약지역, 교육우선, 사건발생, 교육 활성화 대상 등

구분	특징	교육대상
지역 구성원	폭력예방 파수꾼 역할 수행 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통장, 학부모,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 소상공인, 민간사업장(운수·건설 등), 가족친화기업 • 교육 서비스업 종사자(학원강사, 학습지도사 등) • 사회복지시설·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등
취약지역	지리적 조건이 취약하여 교육 접근성 제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벽지, 산간오지, 농산어촌, 도농복합 지역 거주 주민 등
교육우선	취약계층 등 교육 기회가 없어 우선 지원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 장애인*, 이주민**, 학교 밖 청소년 등
사건발생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등으로 집중지원·교육확대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인, 체육인
교육 활성화	예방교육 의무대상임에도, 교육 활성화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신입생, 고3 예비사회인 등

* 다회차 교육 실시 가능 대상(최대 3회기)

- (형 태) 교육대상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 가능
- (규 모) 20명 미만 / 소규모 다회차 교육(1~3회기)

※ 다회차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중앙 교육지원기관에 구두 보고 후 실시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실시 교육(성평등·인권교육) 등과 연계를 통한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족 등 대상 교육 권역별 1회 이상 실시 필수

○ 기타 전략집단

- 사업 발전 및 교육대상 발굴을 위한 MOU 체결(기관 당 연간 10회 제한)

※ 동일 대상 지원 불가

3 교육 운영

가. 교육 운영 절차

절차	교육 신청	강사 연계	교육실시			강사비 지급
관련 서류	교육신청서 →	강의계획서 →	교육 확인서	만족도	강의 확인서	지출결의서 (교육관련 서류 일체)
작성자	신청기관 담당자	강 사	신청기관 담당자	교육생	강 사	사업담당자

- 교육 신청이 들어오면 대상 및 지역을 고려하여 강사 연계
- 강사에게 강의계획서 작성 독려
- 교육 실시 후 관련서류(만족도 설문지, 강의확인서 등) 수합 및 내용 확인 후 강사비지급 등 행정처리

나. 교육 신청

- 규모 : 20명 ~ 100명 내외
 - ※ 노인, 장애인, 이주민, 그룹홈, 아동보호시설, 청소년 쉼터 등 교육 효과성 및 교육집단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 규모 조정(20명 미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앙 교육지원기관과 협의 후 교육 실시 가능
- 기간 : '20년 1월 ~ '20년 12월
- 내용 : 강사*에 의한 1시간 무료교육 지원(폭력예방교육)
 - * 지역 교육지원기관은 '시도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강사풀'을 별도로 구성해야 함

성폭력, 가정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 폭력예방 통합교육 실시

- * 교육 수요자 및 대상자 특성에 따라 성인지적 관점에서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을 통합하여 교육 가능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중복 지원하는 경우

- * 교육시간은 총 2시간(성폭력, 가정폭력 각 1시간) 엄수
- * 교육만족도 조사는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에 대해 각각 별도 실시

다. 교육 콘텐츠 활용

□ 기본방향

- 성평등 관점의 이해 및 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과 ‘성평등 교육’을 연계하여 실시
- 성인지 관점에서 성별 고정관념을 점검하고 성차별적 의식의 문제, 왜곡된 성문화 등을 성찰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둠
 - 폭력의 피해·가해 당사자뿐 아니라 주변인 통합의 관점에서 폭력상황에 대해 구조적으로 인식하고, 지역사회의 안전 문화 조성의 적극적 행위자로서 역할 부여

□ 분야별 주요내용의 구성

- 기본 교육(1회)은 폭력예방교육 및 성평등 교육을 연계하여 실시
- 통합 교육(2회)은 성평등 관점에서 총론 교육을 실시하고, 각 폭력 유형별 특수성을 살린 각론교육을 세부내용으로 구성하여 탄력적으로 실시
 - 교육대상의 특성에 따라 성폭력·성희롱·성매매·가정폭력 등 각론 교육을 결합하여 교육 효과성을 제고
 - ※ (예시)도서벽지·안전취약지역 인근 주민·지역사회 성원 등은 성폭력예방교육, 중소기업·민간 사업장 등은 성희롱 예방교육, 노인·학부모·다문화가정 등은 가정폭력예방교육 등을 결합하여 실시

□ 맞춤형 교육 콘텐츠 활용

- 교육 대상(노인, 장애인, 이주민, 청소년 등) 파악 후 예방교육실시 경험, 관련 사건 발생 유무, 교육환경(강의장, 수강인원)을 고려한 콘텐츠 활용을 권장
 - ※ 여성가족부 추천 콘텐츠 활용 또는 예방교육 통합관리 사이트(<https://shp.mogef.go.kr/>) 내 교육대상별·교육분야별·교육자료별 폭력예방교육 콘텐츠 열람 및 자료 다운 가능

4 강사풀 구성 및 운영

가.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강사풀 구성

- 지역 교육지원기관에서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촉 전문강사 외에도 교수, 전문가 등 역량 있는 일반강사를 포함한 강사풀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구성해야 함
- 각 지역 교육지원기관장은 강사풀 구성 현황을 중앙 교육지원기관장 및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최종 승인한 강사 명단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20년 1분기)

나. 강사 자격기준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촉 전문강사

- 성폭력예방교육 및 통합교육 :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 폭력예방교육 분야 전문강사
- 가정폭력예방교육 : 가정폭력, 양성평등교육 분야 전문강사
- ※ 폭력예방 통합교육 분야 위촉 강사의 경우, 모든 분야 강의 진행 가능

- 다수의 성폭력·가정폭력예방교육 강의 경험이 있는 일반 강사 중 아래 ①~⑤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일반 강사를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강사풀'에 포함할 경우 자체 점검 1회 이상 실시(필수)

- ①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7호(제7호의 경우 같은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상급 학위과정의 입학학력으로 인정되는 학교만 해당한다)에 따른 학교(「평생교육법」 제30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에서 사회복지학·사회학·심리학·법학·가정관리학·의학·간호학·교육학·여성학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의 교과목을 3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사람
- ② 의사 및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 ③ 성폭력·가정폭력 방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④ 상담소·보호시설·긴급전화센터의 장 또는 상담원·강사로서 3년 이상 근무 또는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 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부설 연구기관에서 사회복지학·사회학·심리학·법학·가정관리학·의학·간호학·교육학·여성학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① ~ ⑤]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관련 「교육훈련시설의 시설기준, 교육훈련시설에 두는 강사의 자격기준 및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의 운영기준」 중 2. 교육훈련시설에 두는 강사의 자격기준을 준용

다.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강사 관리

- 중앙 및 지역 교육지원기관 강사 워크숍 개최(각 기관별 연 2회 이상)
 - 지역 교육지원기관은 연 2회 이상 강사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 시·도별 사업추진계획 공유 및 '20년 강사 활동 방향 안내
 - 지역 교육지원기관 및 강사 간 네트워킹, 우수 교육 사례 공유 등
 -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강사는 반드시 중앙 및 지역 교육지원기관의 역량 강화 워크숍에 참석해야 함
- 효과적 교육수행을 위한 강사 지원·관리
 - 지역 교육지원기관과 강사는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확산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정책 파트너로서 상호존중 및 신뢰 관계 구축을 위해 상호 노력하여야 함
 - 교육 실시 전 교육 대상에 대한 기본 정보를 포함한 강의 준비에 필요한 제반 사항(교육신청서 등)을 해당 강사에게 전달하여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강사의 내실 있는 교육준비를 위하여 강의계획서 작성 등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강의 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함
 - 강사는 교육대상자의 현황 및 요구사항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통해 추천콘텐츠 등을 활용하여 강의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만족도 및 효과성을 제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성과관리를 할 필요가 있음
- 지역 교육지원기관에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강의 의뢰에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참여하지 않을 경우, 강사풀에서 해당 강사를 제외 할 수 있음

5 교육 만족도 조사

□ 교육 만족도 조사 및 자체 점검

- 「찾아가는 성폭력·가정폭력예방교육」 사업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으로 교육 효과성 평가 및 품질 제고
- 강사의 교육내용 뿐 아니라 교육현장에 대한 평가결과 수시 환류를 통해 폭력 예방교육 실효성 강화
- 교육만족도 조사 및 다각적인 모니터링 실시로 사업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발전방안 도출

〈교육 만족도조사 및 자체 점검 개요〉

구 분	조 사 자	대 상
교육만족도 조사	중앙 및 지역 교육지원기관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및 교육 진행 강사
자체점검	시·도 담당자	
	지역 교육지원기관 대표 및 담당자	

□ 환 류

- 지역 교육지원기관은 자체 점검 결과보고서를 반드시 강사에게 환류하고 확인서를 구비해야 함
- 집중 관리가 필요한 강사를 대상으로 강의 역량강화를 위한 2차 모니터링 실시 및 (필요시) 해당 강사의 재교육 기회 부여
- 교육만족도 및 자체 점검 정성평가 분석결과를 교육콘텐츠 개발 등에 반영함으로써 현장과 교육의 연계성 강화
 - 폭력예방교육 대상별 표준강의안 개발 및 기존강의안 수정·보완

IV. 예산의 지원 및 관리

1 예산의 지원 및 집행기준

가. 관련 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중앙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지역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
 - ※ 본 지침상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 규정에 따름

나. 시·도별 보조금 편성 및 교부

- 사업 예산은 교육운영에 필요한 실비로 편성하고 아래 기준을 준수
 - 인건비, 강사비, 기본운영비로 구성
 - ※ '찾아가는 가정폭력예방교육' 사업비는 강사지원비, 기본운영비에 한해 편성(인건비 제외)
- 교육규모별 차등 지원(권역별 기준 참조)
- 보조금은 2회 분할 교부(1차 70%, 2차 30%)

다. 보조금 집행

- 사업기간 : '20.1.1.~'20.12.31.
- 집행기한 : '20.12.31.까지 완료
 - 최종 확정 통보된 최종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예산집행계획서상의 보조금 예산

라. 보조금 정산

- 정산시기 : '20.12.~'21.1.(※ 정산보고서 제출 : '21.1.15.까지)
 - 불용액 파악,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여부 등 보조금 사용의 회계검증에 중점
- 정산결과 : 불용액, 부적정 사용액, 이자발생액 반납 조치

2 보조금 집행 및 관리

가. 인건비

- 사업 담당자 1인의 인건비로 교육 규모별 차등 지원
- 찾아가는 성폭력예방교육 사업비로 편성 '가급'은 2인 인건비지원
 - 가정폭력예방교육 미해당
- 인건비 편성기준
 - 원천징수 및 사용자 부담금 포함 금액
 -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 담당자의 시간외 수당 지급 가능
 - 가급의 경우 '사회복지 재무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기관의 사정에 따라 인력 구성 및 인건비 지급 가능(지자체 승인 필수)
 - ※ 전담 2인 또는 전담 1인, 보조 1인 등

○ 인건비 편성기준

(단위: 개, 천원, 명)

구 분	기관수	인건비 총액	종사자수
가	2	41,325	2인
나	6	26,830	1인
다	8	26,300	1인
라	2	25,940	1인

나. 강사비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강사의 강사료
 - 일반/도서벽지: 1시간 / 1회 기준 150,000원
 - 강사료 지급시 강의 확인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후 단체의 관할 세무서 및 시·군·구청에 신고
 - 강사료는 반드시 강사 본인 통장으로 계좌 이체하여야 함
 - ※ 내부 직원(대표자, 사업담당자 등)에 의한 강의 시 어떠한 경우에도 강사료를 개인에게 지급할 수 없으며,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사업비 통장과는 별도로 제3의 통장(기타수입)에 입금하여 자체 집행 기준에 따라 활용 가능함

다. 기본운영비

○ 사업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제경비로 교육규모별 차등 지원 (단위: 천원)

구 분		개수	교육 횟수	기본운영비
성폭력 예방교육	가급	2	400	22,075
	나급	6	300	16,470
	다급	8	215	11,960
	라급	2	100	6,470
구분		개수	교육 횟수	기본운영비
가정폭력 예방교육	가급	2	50	5,500
	나급	6	35	3,500
	다급	8	30	3,000
	라급	2	25	3,000

※ 워크숍 경비, 회의비, 교통통신비, 우편료, 업무보조원 등

※ 인건비 편성 기준에 따른 인건비만으로 지출이 어려운 경우 운영비에서 4대보험 기관부담금, 퇴직적립금 지급 가능

○ 기본운영비는 아래 범위 내에서 집행

교육 지원경비	<p>가. 강사 워크숍 및 소모임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시간 이내 : 1시간 당 최대 200,000원 / 1인 지급 가능 • 2시간 초과 : 초과 1시간 당 최대 120,000원 / 1인 지급 가능 - 워크숍 진행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구비 : 3,000원 / 1인 이내 • 다과비 : 3,000원 / 1인 이내 • 식 비 : 10,000원 / 1인 이내 - 자료집 인쇄비 : 10,000원 / 권 이내 - 임차료(워크숍 장소) : 최소임차료 계상 <p>나. 보조강사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시간 이내 : 50,000원/1인 • 1시간 초과 : 초과 1시간 당 최대 20,000원 / 1인 지급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사워크숍 강사료의 세부 기준은 2020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매뉴얼 준용 • 정산 시 워크숍 자료집과 참석자 명단을 함께 제출 • 보조강사비 내부직원 지급불가
--------------------	---	--

<p>운영경비</p>	<p>가. 자문회의비 - 자문비 • 2시간 이내 : 100,000원 / 1인 • 2시간 초과 : 150,000원 / 1인 - 진행비 • 외부자문위원 : 10,000원 / 1인 • 내부참석자 : 5,000원 / 1인 나. 사무용품비 - 복사용지 및 토너 • 복사용지 : 21,000원 / 1BOX(1개월) • 토너 : 150,000원 / 1개(6개월) - 기타 사무용품 : 실비 다. 유인물 등 제작비 : 10,000원/권(부) 이내 ※ 홍보물품 제작 등 라. 교육운영비 - 교육용 다과 및 문구 등 : 40,000원/1회(필요시) - 임차료(교육 장소) : 최소임차료 계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문회의 참석비는 외부 자문위원이 포함된 자문 회의에만 지급 ※ 1일 1회에 한함 • 자문회의 참석비 내부직원 지급불가 • 기타 사무용품 자산성 물품 구매 불가 • 교육운영비는 도서벽지 교육 실시 등 필요시 지출 												
<p>교통통신비</p>	<p>가. 출장비 ① 강사 여비 - 도서벽지 및 권역 내 왕복 100km 이상 • 교통비 : 50,000원 / 1회 • 식비 : 20,000원 / 1일 • 숙박비 : 50,000원 / 1일 ※ 도서벽지 등 선박을 통한 이동이 불가피할 경우 교통비 실비(선박 운임) 지출 가능(증빙자료로 배표 등 인증 필수) ② 사업 담당자 및 기관장의 사업 관련 출장 관련 - 교통비 • 시(도) 내 출장</p> <table border="1" data-bbox="443 1243 1010 1359"> <thead> <tr> <th colspan="2">왕복 50km</th> <th colspan="2">왕복 100km</th> </tr> <tr> <th>미만</th> <th>이상</th> <th>미만</th> <th>이상</th> </tr> </thead> <tbody> <tr> <td>20,000원</td> <td>30,000원</td> <td>50,000원</td> <td></td> </tr> </tbody> </table> <p>• 시(도) 외 출장 : 실비(대중교통 운임) ※ 도서벽지 등 선박을 통한 이동이 불가피할 경우 교통비 실비(선박 운임) 지출 가능(증빙자료로 배표 등 인증 필수) - 일비 및 식비 : 각 20,000원 ※ 1일 5시간 이상 출장 시 나. 도서벽지 교육 시간보상수당(강사) : 100,000원 / 1일 다. 통신비, 우편료 등 : 실비 ※ 대표전화 1661-6005 사용요금·문자 발송비 등 포함</p>	왕복 50km		왕복 100km		미만	이상	미만	이상	20,000원	30,000원	5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통신비는 세부 지침에 의해 지급 가능 • 강사여비의 경우, 교육 시 강사의 원거리(도서벽지 등)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 지출가능
왕복 50km		왕복 100km												
미만	이상	미만	이상											
20,000원	30,000원	50,000원												
<p>업무보조원</p>	<p>가. 단순인건비(2020년 최저임금 기준 이상 계상) - 8,590원 이상 / 1시간 ※ 주휴수당, 고용·산재보험(사용자 부담금) 등 법정부담금 산정 필요, 1인당 월 60시간(주휴수당 포함) 초과 금지, 원천징수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직원 지급 불가 												

라. 집행 관련 문서의 관리

○ 관련 문서의 작성

- 사업비 집행은 지출결의서(각 기관양식)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사업비 집행내역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집행 관련 문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지출결의서 세부내용 작성 시 육하원칙에 의해 작성
- 지출결의서 내용 및 증빙이 일치하도록 상세히 기재
- 물품영수증(세금계산서)의 금액과 통장출금액이 일치하여야 함
(하나의 증빙을 여러 가지 비목으로 나누어 설정하지 않도록 함)
- 지출비용에 대한 산출근거를 반드시 명시
ex) 단가 × 인원 × 횟수 = 지출비용

○ 관련 증빙문서

- 관련 증빙문서는 지출내역에 기재된 항목순대로 편철하여 제출(제출된 증빙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영수증 원본은 각 기관에서 향후 5년간 보관)
- 국고 보조금과 자부담 영수증을 구분하여 별도로 편철

V. 지도·점검 및 평가

1 지도·점검

가. 기본방향

- 기관 사업 및 예산 집행이 지침에 부합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점검을 통하여 폭력예방교육의 질적 제고 도모
- 지침 변경사항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변경 내용의 조기 정착 및 현장 어려움 파악을 통한 개선방안 모색

나. 지도점검 개요

구 분	내 용
점검주체	시·도
실시기간	6월(지자체 자체 계획 수립 후 실시)
결과보고	시·도 → 여성가족부
점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사자 채용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경쟁채용 준수, 당해 연도 기준 근로계약 체결 여부 등 ○ 직원복무상황 ○ 예산회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행지침 준수 여부, e-나라도움 집행관리 여부 등 ○ 사업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집행내역 및 집행률 현황, 사업계획 대비 이행실적
결과활용	지역 교육지원기관 최종 사업평가 시 반영
향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점검결과 제출(여가부) : 7월 ○ 중간 발표회 실시 : 7~8월 예정 ※ 점검단 : 여성가족부, 중앙 교육지원기관, 외부전문가 등

다. 중간 발표회

- 지역 교육지원기관 상반기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사업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발전방향 및 보완사항 파악, 전문가 컨설팅 실시를 통한 연내 사업의 질적 향상도모

구분	내용
점검단	여성가족부, 중앙 교육지원기관, 외부 전문가 등
실시기간	7~8월
결과보고	중앙 교육지원기관 → 여성가족부
점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교육지원기관 사업 중간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반기 사업 기획·운영 충실도(신규 교육대상 발굴 및 맞춤형 강의 등) - 사업 운영에 대한 이해 및 현장 적용 능력 향상을 위한 컨설팅
결과활용	○ 지역 교육지원기관 사업운영 컨설팅 및 최종 사업평가 시 반영(20%)
향후계획	○ 지역 교육지원기관 사업평가 실시(11월)

- 중간 발표회 평가기준(안)

구분	점검 내용	배점 (100점)
1	• 사업계획서에 맞추어 사업 추진이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계획 대비 이행 상황, 변화 정도, 적절성, 시의성 등)	20
2	• 지역 교육지원기관은 해당 지역의 지리적·인구적 특성 또는 시의성을 반영하여 교육대상을 발굴하였는가?	20
3	• 교육대상의 특성(직업, 연령 등)을 고려하여 교육내용을 기획하였는가?	20
4	• 강사 역량강화 및 관리를 위한 추진체계를 보유하여 실행하였는가? (자체 점검 및 결과 환류 실시 / 강사 워크숍·스터디 등 실시)	20
5	•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는가? (지자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사업 운영 예시)	20
6	• (가점) 중간발표를 위한 준비를 충실히 하였는가? (발표 내용의 구성, 발표 근거자료 준비 등)	(+5)
7	• (가점)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사업에 대한 개선요청 또는 건의사항을 제출하였는가?	(+5)

2 사업 평가

- 목적 : 지원 기관별 성과를 종합 평가하여 사업 내실화 도모
- 평가시기 : '20.11월 중('20.9.30.기준)
- 평가대상 : '20년도 지역 교육지원기관 18개소
- 평가 기준일 : '20.9.30
- 평가방법 : 사업수행기관별로 아래 기준에 따라 종합평가
 - 각 기관별 자체 평가보고서에 근거하여 배점 환산
 - ※ 예산 처리 및 적정성 등은 관할 시·도의 지도점검 및 현장점검 결과에 근거함
- 평가 과정



○ 평가기준(안)

항 목	세 부 내 용	배점
정량평가	• 권역별 목표 대비 교육 추진 실적	40점
	• 강사워크숍 실시 등 강사역량강화 지원 실적	
	• 자체점검 실시 및 내용 환류 실적	
	• 교육생 만족도 점수 실적	
	•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실적	
	• 보고 시한 준수 및 제출(첨부) 자료 누락 여부	
정성평가	• 사업 수행의 적절성 및 시의성	60점
	• 교육 사각지대 및 전략대상 발굴	
	• 대상 맞춤형 교육기획 및 실행	
	• 강사 관리 체계 구축	
	• 지자체 사업 협조도	
합 계		100점

※ 세부내용은 추후 조정될 수 있음